

러시아·CIS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03. 11. 18

목 차

제 1 부 러시아 진출전략 / 3

- 1. 서부러시아 시장동향 5
- 2. 극동러시아 시장동향 35
- 3. 러시아 내 공장설립시 유의사항 85
- 4. 러시아 물류 운송 절차 91
- 5. 러시아 인증제도 105

제 2 부 CIS 3개국 시장 진출전략 / 119

- 6. 우크라이나 시장동향 121
- 7. 카자흐스탄 시장동향 145
- 8. 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161

별 첨 러시아 수출지원제도 현황 / 189



제 1 부

러시아 진출전략

서부러시아 시장동향

KOTRA CIS 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무역관장
이 광 희

I. 러시아 주요 경제 현황

1. 주요 경제 지표

지 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원
인구(백만명) 주1)	146.3	145.6	144.8	144.0	1
GDP(백만\$)	193,616.3	259,692.2	309,966.2	346,562.9	
GDP성장율(%)	5.4	9.0	5.0	4.3	
1인당 GDP(\$)	1,327	1,789	2,147	2,418	
소매물가상승율(%)	37	20	19	15.1	
실업율(%)	11.7	10.2	9.0	7.1	2
재정수지(%/GDP)	-1.11	1.54	3.01	1.5	3
수출(\$백만)	75,551	105,033	101,615	106,936	4
수입(\$백만)	39,537	44,862	53,764	60,520	
경상수지(\$백만)	24,616	46,839	34,842	23,984주2)	
외채(\$십억) 주3)	178.6	161.4	151.1	149.7	
외국인투자(\$십억)	9.56	10.96	14.258	19.78	3
외환보유고(\$십억)	12.5	27.95	36.6	47.7	4
평균환율(루블/\$)	23.8	27.58	29.15	30.96	

주 1) 해당년도 1월 1일 기준

2) 1~9월중

3)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원 : 1.CIS통계위원회, 2.러시아통계위원회, 3.러시아재무부, 4.러시아중앙은행]

2. 최근 경제 동향

가. 종합(경제성장)

- 당초 러시아정부는 200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최대 4.5%로 예측한 바 있으나, 2002년 하반기 이후 이라크를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된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원유 수출호조로 인해 금년 상반기중 경제성장세가 당초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 전망치를 5.4%로 올린 바 있음.
- 이라크전 종전 이후 국제 원유시세가 다소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2003년도 상반기중 7.2%의 기록적인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5.9%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 추세로 볼 때에 2003년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6%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인플레이션

- 당초 러시아 정부의 2003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목표는 10~12%인 바 있음. 그러나 7월말 현재 인플레이율이 8.7%에 달하고 있어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내년도 인플레 목표는 8~10%인데, 장기적으로 공공요금(가스, 전기, 통신 등)의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 금융부문(환율, 외채 등)

-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와 석유수출 호조로 인한 외화의 대대적 유입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루블화의 강세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루블화

절상폭을 낮추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 금년도 루블화의 절상폭을 6% 이내에서 묶는 것이 정부의 목표임.

- 석유수출 호조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3년 1월 1일 외환보유고는 불과 47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동년 8월 8일에는 646억달러를 기록, 7개월간 증가율이 무려 35.1%에 달하였음.

라. 대외무역

- 높은 석유 및 가스 국제가격으로 인해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음.
- 2003년 상반기 수출은 6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가 증가하였음.
- 동 기간중 석유 수출의 경우 물량기준으로 16% 증가한 106.019백만톤을 수출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43%가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천연가스 수출의 경우 물량기준으로는 겨우 1.5% 증가한 952.4억 CBM을 수출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0%가 증가한 100.2억달러의 실적을 보였음.
- 즉 국제시세가 높음에 따라 물량증가율보다 금액증가율이 훨씬 큰 양상을 2003년에 보이고 있는 것임.
- 러시아 수출에서 석유의 비중은 28.9%를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의 비중은 16.4%를 차지하여 양대 자원 수출 비중은 러시아 수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3%나 차지.
- 한편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유입 증가로 인해 기계/설비류, 자동차 등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도 역시 크게 증가, 2003년 상반기중 수입 총액은 250억 달러로 20.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이상 자료원 : 러시아 통계위원회)

마. 외국인 투자유치

- 2003년 상반기 러시아의 외국자본 누적규모는 483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 증가하였음. 형태별로는 상환을 해야하는 차관형식의 자금(국제 기관, 무역신용 등)이 전체의 50.9%(1년전 47.5%)를 차지하였고 직접투자는 46.6%(1년전 48.7%), 포트폴리오 투자 2.4%(1년전 3.8%)를 각각 보였음.
- 러시아에 대한 주요한 투자국가들은 독일, 미국, 사이프러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였으며 이들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 누적 규모의 71.0% 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직접투자 부분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축적 규모의 71.8%를 차지.
- 2003년 상반기, 대러 외국인 투자는 2002년 상반기와 비교해 1.5배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외국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유통업, 공공식료품서비스업 등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 1인당 외국인투자 유치 액수는 가까운 동유럽과 비교시에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2003년 상반기 형태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US\$백만, %)

	2003년 상반기			참고 : 2002년 상반기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비중(%)
총투자	12,662	51.3	100	25.2	100
직접투자(FDI)	2,533	35.3	20.0	74.6	22.4
포트폴리오투자	38	18.9	0.3	83.3	2.4
기타투자	10,091	60.2	79.7	60.0	75.2
무역신용	1,569	94.0	12.4	4.6	9.6
기타신용	8,437	56.3	66.6	72.3	64.5
180일 이하	1,877	△8.7	14.8	13.1	24.6
180일 이상	6,560	96.3	51.8	150	39.9
기타	85	△7.1	0.7	210	1.1

<2003년 상반기 분야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US\$백만)

	유입	상환 (이탈)	2003년 상반기말 누적액	
			금액	비중(%)
총 계	12,662	6,900	48,341	100
공업	4,326	2,842	17,350	35.9
건설	93	38	597	1.2
농업	37	7	239	0.5
교통(운송)	202	85	2,765	5.7
통신	539	98	4,227	8.8
유통, 무역, 식음료서비스 등	5,686	2,829	16,805	34.8

-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시장 규모(인구 1억5천만, 구소련 CIS국가 인구 포함시 2억5천만명), 저렴한 노동력 등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관료들의 태도와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장애요소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됨.

3. WTO 가입 동향(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가. 주요 쟁점 사항

1) 상품시장 개방

- 러시아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WTO 가입시 가장 높은 수입관세율 유지. 현재 80%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 합의가 완료된 상태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제품은 농산물, 의약품, 가구, 민간 항공기, 자동차 등임.
-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안 -에너지 가격, 농

업보호- 등을 위해 “상품 시장개방” 문제는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2) 농업 보조금 지급

- 러시아측은 WTO가입시 일정기간 특별 농업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를 현행 136억달러에서 90억~10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의 제안은 Cairns 그룹 회원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15억~20억달러안과는 차이가 여전히 큼.

3) 서비스시장 개방

<금융>

- 향후 가입협상에서 러시아측이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금융인들도 법적인 제한이 외국 자본의 침투를 막지 못할 것으로 평가

<보험>

- 러시아 보험업체들은 재원이나 시스템이 외국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협상단은 최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통신>

- 러시아측은 현재 장거리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를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Rostelecom” 에게 5년간의 독점권 보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 유예기간 문제외에도 현재 국제전화 수익이 시외전화 이용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도 쟁점중 하나.

4) 구조적인 문제들

- 가) 러시아 법조항중 WTO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음. 특히 관세규정 및 강제인증 제도 등 비관세장벽이 대표적. 실무그룹 참여국가들은 무조건적인 WTO규정과의 합일을 주장.

WTO규정과 어긋나는 법(수입규제조치 관련 법, 반덤핑 관련 법, 대외교역 관련 정부의 규제 관련 법)은 현재 의회에서 개정 논의중이며 하원 춘계 회기중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발표. 러시아 의회는 올 봄 회기중 관세법과 외환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외에 지적재산권 문제도 특히 미국이 문제 제기. 러시아측은 금년 가을중 민법개정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불법복제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기타(소위 "WTO+" 요구사항) : 정부조달 협정, 민간항공협정 체결, 에너지 이중가격제도(특히 EU가 강력히 주장), 수출세 폐지 등

이중 에너지 가격, 특히 수출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국내가스가격이 쟁점.

<향후 전망>

- 러시아 관리들은 WTO가입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쯤 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요 협상 난항부문은 정부의 보호정책이 없으면 자동차, 섬유 등을 포함하여 적지않은 러시아 국내산업 붕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호혜적인 유예기간 요구에 대해 EU, 미국 등 주요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강력한 반대, WTO+ 요구사항이다. 특히 에너지 이중가격제도는 러시아 협상단은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EU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협상 쟁점외에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도 큰 변수로 작용. 올 12월과 내년 3월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 관련, 금년중 개혁의 속도가 늦어지는 기미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WTO가입은 빨라야 2007년이라는 예상이 우세.

4. 향후 러시아 경제전망

- 러시아 경제성장은 모라토리움 이후인 199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99년과 2000년은 대폭적인 루블 평가절하로 인한 제조업 성장이 경제성장의 큰 축이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평가절하 효과가 점차 떨어져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을 보인 바 있음.
- 2003년의 경우 높은 국제 유가가 성장의 주요인이었음. 따라서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대체 성장엔진이 없는 상태로 불안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한편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며, 집권초기부터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펼친 바 있음. 2004년 3월 예정된 대선에서 푸틴의 재집권 여부 및 향후 행보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즉, 향후 러시아 경제의 열쇠는 국제유가 동향과 푸틴 대통령의 경제개혁 행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5. 시장환경 및 특성

가. 수입시장구조

- 매력적인 수입시장
 - 체제전환 이후 자체 제조업 기반 붕괴로 소비재의 50% 이상을 수입산으로 충당
 - 최근 5년 연속의 성장호조로 내수증가
 - 수입대체 산업육성정책으로 기계, 설비, 중소플랜트 등 자본재 수요의 증가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기

- 체제전환 10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과도기
-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 미흡
 - WTO 가입추진에 따라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진행中
- 복잡한 법체계 및 법령의 대폭적인 개혁 추진(단, 제도화와 집행간의 차이 존재)
- 운송, 통신, 금융 등 주요 기간 서비스 미비

나. 소비자 특성

○ 소비의 이중구조

- 소수의 부유층(인구의 10% 수준)과 다수의 빈곤층 (40% 수준)
- 부유층은 고가의 서구 최고급 브랜드 선호, 빈곤층은 자국산 및 저가의 수입제품 구매
- 그러나, 2001년 이후 소위 '중산층'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

○ 구매결정 요인

- 가격요인 중시에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음

다. 상거래 관습

○ 독특한 대금결제 관행

- 최근 대형 수입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영세업체로서 소량주문 및 단기 딜리버리 선호 (현금 유동성 중요)
- 일부 현금선불과 외상거래가 결합된 형태
- 금융제도의 미비 및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은행이용 기피 (L/C 거래 기피 경향)
 - 2001년부터 소득세를 13%로 하향 단일세율화 하는 등 조세부담율을 낮춰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금

융제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탈세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인맥이 중요한 상거래 관행

- 서구적 합리주의 보다는 인정과 친분관계에 의한 직접 對面 비즈니스 선호 관행
- 언어소통 능력과 러시아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비즈니스 추진에 중요한 역할

라. 유통구조의 특징

○ 유통산업의 미발달

- 국가배급 시스템의 붕괴후 유통시스템 혼란. 최근에는 IKEA, METRO, Auchan 등 외국계 유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나, 아직까지 수요에 턱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며, 이나마 모스크바에만 집중되고 있음.
- 제조업체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미흡.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음.

○ 지하경제 (Shadow Economy) 비대

- 지하경제가 GDP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국민의 약 10%가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부유층으로 부상
-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은행에 예치한 외화액이 수백억불 규모로 추정

6. 대외교역 현황

가. 수입시장 구조(2001년 기준)

○ 지역별 교역비중(수출입 합계)

- EU 36.7%, CIS 17.0%, APEC 16.4%, 중동부유럽 12.9%, OPEC 1.5%, 기타국가 15.5%

○ 주요국가별 교역액 : 중국과의 교역 비중 급증세

- 독일 146억불(2001년 대비 2.9% 감소), 벨라루스 99억불(6.3% 증가), 이탈리아 96억불(5.7% 증가), 중국 92억불(26.8% 증가), 우크라이나 91억불(0.7% 감소), 미국 69억불(7.2% 감소), 폴란드 50억불(3% 감소), 영국 49억불(6.9% 감소), 카자흐스탄 43억불(9.4% 감소)

○ 품목별 수입시장 구조(CIS국가로부터의 수입 제외)

품목	비중	품목	비중
기계·설비, 운송수단	38.7%	의류·원단, 신발류	4.4%
식품류(농산물)	23.9%	연료, 에너지	0.6%
고무, 화학제품	17.8%	귀금속	0.1%
금속제품	4.9%	기타	5.4%
목재·종이류	5.3%		

II. 러시아 비즈니스 관련 주요 제도

1. 현지 투자관련 정보

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 합작회사(joint-stock society),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society)
 - 법인외에 자회사나 지사의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
- 합작회사 : 합작회사는 공개회사(OAO) 및 폐쇄회사(ZAO)로 나뉨. 국방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업체의 지분제한비율 없음. 다만 외국업체의 주식은 연방 주식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등록되지 않은 주식 거래는 무효임.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합작회사 설립보다 그 절차가 간단함.(발행주식 신고 불요 등) 그러나 러시아법상 설립자는 1인이어야 하며, 소기업(small business)으로 간주될 수 없어 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나. 자본금

- 최소 법정자본금

법적 형태		최소 법정 자본금	
		외국인 참여 업체	내국인만 참여한 업체
합작회사	OAO	법정 최소월급여의 1천배	법정 최소월급여의 1천배
	ZAO		법정 최소월급여의 1백배
유한책임회사			법정 최소월급여의 1백배

※ 2003년 현재 법정 최소 월급여는 약 15달러임.

- 자본금은 루블 및 외화 모두 가능함.
- 법정 최소월급여의 200배가 넘는 자산을 출자할 경우, 감정인의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위해 수입되는 고정자산의 경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다. 지사

- 외국업체 지사의 경우 현지업체로 취급되지 않음. 기본적으로 지사는 외국기업의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다수의 외국기업 지사가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도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러시아 정부는 현지업체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하게 됨.

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등록

- 설립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
 - 국세청 신고
 - 통계코드 수령(통계위원회 신고후)
 - 은행 구좌 개설
 - 합작기업의 경우 연방 주식 위원회에 대한 신고 등 필요
- 기타 : 설립등록 전후에 연금기금, 사회안전기금, 의료보험기금에 신고를 필해야만 함.

마. 외국인투자자와 투자기업의 혜택

- 법률상 우선투자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러시아정부는 우선투자프로젝트 리스트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임.

- 외국인투자자가 법정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 수입하는 설비와 부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가 면제됨.

바. 외국인 투자제한

- 국영기업 및 전략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며, 금융·보험업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제한이 있음.
- 러시아에서 면허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통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IV, V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 및 재활용	
전염병 병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제약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a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객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농업부
가축 사육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석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석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 스포츠 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 표준위원회
건축 디자인, I,II 등급의 건물 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 건축위원회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 어업 위원회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뮤추얼 펀드 운용	연방 주식시장 위원회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 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폭발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청
우주탐사활동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용 제품의 수리	우주청, 교통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의한 정보 도청 제품을 위한 특정기구의 향후 재판매를 위한 개발, 제조, 판매 및 인수	연방보안국
정보 도청을 위한 전자장치의 탐지활동	연방보안국,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호	국가 기술 위원회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국가 안전에 속하는 정보의 사용을 수반한 작업	연방보안국 및 지방사무소, 외국에 소재한 러시아의 정보기관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국가 기밀 보호 관련 활동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연방보안국
암호 관련 제품 유통, 암호기기 보수, 유지, 정보 암호화 서비스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암호기기 개발 및 생산	
디지털 서명키 인증서 발급, 디지털 서명권자의 등록 등	
철,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집, 보유, 판매	관련 기관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	통신부
TV, 라디오 방송(위성방송 포함)	
보세창고 창설	국가 관세위원회
면제점 창설	
자유세관 창고 창설	
세관 지역내 제품 가공	
세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제품 가공	
임시보관 창고 창설	
세관 브로커 활동	
공증업	법무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이전	경제개발통상부
교육	교육부
원자력을 이용한 분야에서의 활동	원자력 통제 사찰단

2. 현지 세제(稅制) 정보

가. 징세 주체에 따른 분류

- 러시아 세금은 징세 주체에 따라 연방세(연방 정부), (광역단체) 지방세 (Regional Tax),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로 나눌 수 있음.

나. 연방세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20%, 단 식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정기간행물은 10%)
- 법인 이윤세 : 기본 과세율 24%(단, 조세수입의 6%는 연방, 16%는 광역단체, 2%는 기초단체 예산수입으로 편입)
- 통합사회세(피고용자의 월평균 급여의 35.6%) :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휘발유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13%)
- 관세, 수출세 등

다.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기업 재산세(최대 2%)
- 교통세
- 삼림수익세
- 판매세(5%,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 등

라.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의 종류 및 주요세금의 세율

- 광고세(최대 광고비의 5%)
- 지방정부 비용 커버를 위한 특별세(경찰, 교육 등)
- 개인 재산세 등

※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세무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3. 노동법(2002년 개정) 주요 내용

가. 러시아 노동법중 주요 특이사항

○ 노동 계약 의무

- 단기 노동(Term Labor)일 경우도 정식 노동 계약체결 의무
 - 단기노동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에 명시
 - 단기 노동 계약체결시 계약서상 정식근무계약체결 불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단기 노동계약 체결은 5년이하에 한함)

※ 단기 노동계약체결시도 고용주세(기본세율 35.6%) 지불해야함

○ 노동 계약 체결시 의무 기재사항

- 노동 장소(근무 부서도 함께 기재)
- 노동 개시일(계약서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이 노동개시일이며, 실제 노동 개시후 3일이내에 계약서 체결도 가능함)
- 직위, 담당 업무 기능
- 피고용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자의 근무조건과 상여금
- 휴가일수 및 휴가 신청 절차

- 수습 기간(probation period)은 최장 3개월. 단, 기업체 최고경영자, 회계 책임자, 자회사, 지사, 부속기구 대표에 한해 6개월까지 수습기간 연장 가능 : 수습기간 이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치 않을 경우 노동계약 해지 가능. 단, 해고 3일전까지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약 해고 노동자가 고용주의 결정에 불만을 품을시 법원에 제소 가능.(일반적인 피고용자 해고시에도 해고 3일전까지 서면통보 의무)

○ 서면 공지 의무사항

- 고용주가 노동 계약조항 변경을 원할 시(2개월전 서면통보)
- 고용 취소 사유
- 피고용자의 봉급 관련 변경 사항

- 노동 계약 취소
- 제3자로부터의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취득 기도
- 피고용자 부서 변경사항
-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 피고용자의 출장 파견

※ 이상은 서면통보후 반드시 피고용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휴가

-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간 28일임(토, 일요일 포함)
 - 최대 휴가일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후 6개월후 휴가가 가능함.
-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 실시 휴가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함. (잔여 휴가기간은 14일 이하 휴가실시도 무방)

<미사용 휴가의 차년이월>

- ◇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
- ◇ 단, 업체측(고용주측) 사정에 의한 휴가 미사용 경우에 한함.(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미사용은 이월 불가)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성>

- ◇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며, 최대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함.
- ◇ 28일 초과 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가능.

다. 보수

- 최소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 유지 임금(living wage) 이상이어야 함(현재 최저 생활 임금은 월 2,500루블임).
- 급여체불시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 이자율의 1/300>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신규조항)
- 15일 이상 임금 체불시 피고용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때까지 대 고용주 서면통보 후 업무를 중지 할 권리가 있음(신규조항)
- 고용주의 잘못으로 피고용주가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으로 실질 평균 급여의 2/3를 지급함
- 급여의 비화폐 지급(현물지급)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 고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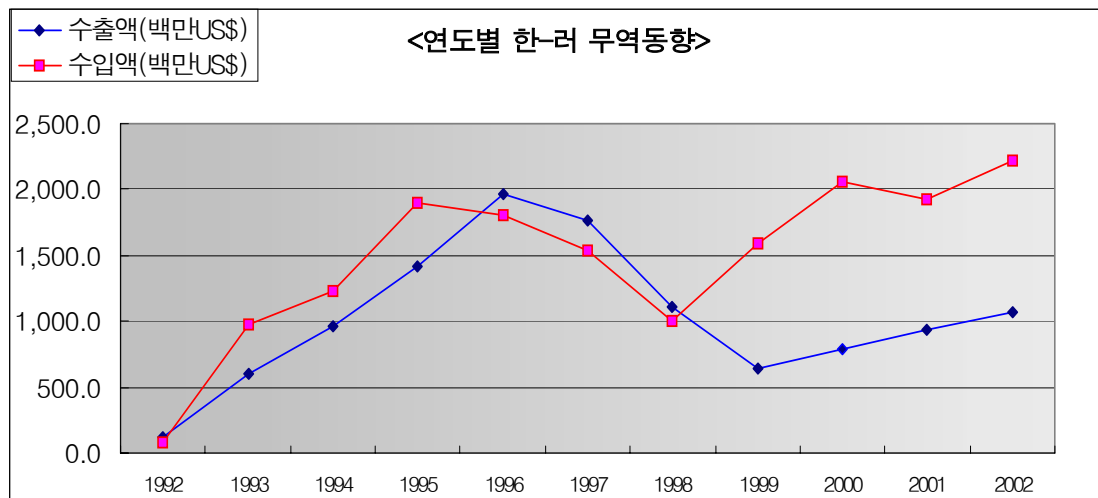
라. 이중 근무 및 시간외 근무

- 시간외 근무는 합법이나,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은 금전 지불이나 휴가로 대체 가능함.
- 이중 근무(job combination)는 양자간 합의 필요(신규조항)
 - ※ 이중 근무(job combination) : 2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것.
- 불규칙 노동시간 근무직 리스트는 단체 협약, 현지법인 고용규정에 명문화되어있어야 함.
- 노동 강요(Forced Work)는 금지되며, 노동강요시 정부가 규정한 최소 노동수당(MROT)의 100배(현재기준 : 10,000루블)를 납부해야 함.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현황

1. 교역현황

가. 최근 10년간 양국간 교역 현황



<연도별 한-러간 교역 추이>

(단위 : 천불,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118,084	-	74,830	-
1993	601,171	409.1	974,821	1,202.7
1994	961,911	60.0	1,229,652	26.1
1995	1,415,881	47.2	1,892,880	53.9
1996	1,967,534	39.0	1,810,266	-4.4
1997	1,767,932	-10.1	1,534,783	-15.2
1998	1,113,846	-37.0	998,579	-34.9
1999	637,052	-42.8	1,590,469	59.3
2000	788,127	23.7	2,058,265	29.4
2001	938,161	19.0	1,929,476	-6.3
2002	1,065,875	13.6	2,217,604	14.9
2003(1~9월)	1,088,220	43.1	1,721,392	9.4

(자료원 : KOTIS)

나. 2002년도 수출입 현황

- 2002년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10억 6,587만 달러로 2001년에 비해 13.6%가 증가. 이는 단순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각각 23.7%, 19%, 13.6%의 가파른 성장세를 3년 연속 기록한 것임.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액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공식 통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2억 1,760만불을 기록하여 1992년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주력품목은 석유, 철금속, 비철금속, 석탄, 원목 등 원부자재로서 2002년에는 특히 갑각류 등 어류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음.

다. 2003년도 수출입 현황

- 9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1,088,220천불로 2002년 연간 수출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증가율은 무려 43.1%에 달하였음. 수입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은 9.4%에 머물렀음.

라. 주요 수출입 품목

-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주력품목은 석유화학제품(PET Resin 등), 수송기계(자동차), 산업용 전자제품(핸드폰 포함), 농산물(라면 등 식품류), 직물, 가정용 전자제품 등임. 2003년도 9월까지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철강제품, 수송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섬유제품, 직물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의 경우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 우라늄 등),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등 3대 품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물성 연료의 수입이 2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함. 반면 무기류, 산업기계, 농산물, 수송기계의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주요 품목별 대러 수출 통계>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2		2003(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65,875	13.6	1,088,220	43.1
1	석유화학제품	242,430	24.4	243,183	30.7
2	수송기계	117,434	63.9	159,483	131.0
3	산업용전자제품	102,098	24.6	128,764	100.8
4	농산물	111,780	21.1	91,247	9.7
5	직물	91,204	-0.6	71,616	5.8
6	가정용전자제품	69,810	-3.0	60,728	23.5
7	섬유제품	51,207	-10.2	39,880	-0.6
8	산업기계	37,491	40.9	34,216	19.6
9	플라스틱제품	29,848	24.0	32,536	52.5
10	정밀화학제품	24,335	13.8	31,799	70.8
11	전자부품	26,862	27.9	22,742	28.2
12	철강제품	8,084	-5.9	21,066	303.2
13	기초산업기계	13,399	38.5	19,551	89.6
14	축산물	21,982	-39.3	19,019	44.6
15	정밀기계	17,625	3.0	14,882	18.3
16	광물성연료	12,349	-46.7	13,950	58.8
17	제지원료및종이제품	16,858	25.1	13,593	14.2
18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103	20.5	11,181	124.6
19	섬유원료	5,619	168.0	10,314	211.3
20	기타기계류	4,547	-19.8	6,279	70.6

☆ 품목분류 기준 : MTI 2단위

☆ 자료원 : KOTIS

<주요 품목별 대러 수입 통계>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2		2003(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17,604	14.9	1,721,392	9.4
1	철강제품	529,519	18.5	433,196	13.4
2	광물성연료	762,107	21.3	398,786	-27.7
3	비철금속제품	327,799	-3.8	354,160	51.6
4	수산물	215,862	40.4	205,028	25.7
5	임산물	109,836	6.4	78,108	-2.6
6	석유화학제품	62,641	-23.4	54,867	20.2
7	제지원료및종이제품	58,659	13.5	47,686	12.8
8	무기류	4,020	198.5	37,702	2,235.5
9	비료	23,708	-16.4	22,959	63.3
10	농산물	9,988	65.8	20,168	153.1
11	수송기계	8,555	-55.2	14,779	122.9
12	산업기계	2,164	25.5	9,721	759.1
13	섬유사	14,268	-20.9	8,090	-33.1
14	산업용전자제품	6,236	35.3	5,326	20.9
15	정밀화학제품	15,858	25.2	4,812	-45.5
16	금속광물	36,902	496.8	3,969	116.3
17	전자부품	5,328	45.3	3,622	-5.7
18	축산물	8,881	44.4	3,493	-23.6
19	기초산업기계	2,298	-11.1	2,147	27.9
20	중전기	937	-10.8	2,142	211.0

☆ 품목분류 기준 : MTI 2단위

☆ 자료원 : KOTIS

마. 대러 수출유망 품목

- 반사 직물, 환자 감시 장치, SMT, 수액 펌프, PP 식품 포장 필름, 초고속 인터넷 모뎀, LCD/TFT 모니터, 핸드폰, PDA, Polyester 단섬유, 의료용 장갑, 안료, 커튼용 직물, DVR, 유압브레이커, 광고용 인쇄지(폴리머 용지), 굴착기(Excavator), 영수증 프린터, 다목적 무선 헤드폰, 인쇄 포장 기자재

※ 상기 20개 제품 시장동향은 기발행된 책자인 “러시아·CIS유망품목”에 수록

2. 투자 현황

가. 연도별 대러 투자 추이

[단위 : 건, 천불]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6월)	누계
총 투자건수	10	9	8	7	135
총 투자금액	3,153	6,789	23,783	16,176	202,297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나. 주요 분야별 투자 현황(총투자 2003년 6월말 기준)

- 농림어업 : 24건 6,889천불
- 광업(원유, 천연가스) : 1건 29,065천불
- 제조업 : 50건 51,132천불
- 건설업 : 1건 104천불
- 도소매업 : 39건 9,633천불
- 통신업 : 7건 28,088천불
- 숙박음식점업 : 4건 42,062천불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9건 35,324천불

다. 향후 대러 투자 전망

- 서구 주요 기업들은 대러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식료품 등의 현지생산
 - IKEA, METRO 등 대형 유통업체 진출 러시

- 러시아의 투명성 확대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러 투자 증가 전망
 - 2007년경 WTO 가입 전망
 - WTO 가입을 위해 법적, 제도적 투명성 확대 전망

극동러시아 시장동향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장

고 지 찬

1. 극동 러시아 경제 · 무역 동향

가. 극동 러시아 최근 경제동향

- 투자 환경 개선 및 극동/시베리아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추진
 - 2003년 상반기 현재 對 러시아 외국인 투자 규모는 126.6억불로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3%가 증가하였고, 향후 러시아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간소화 정책 등 관련법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사회인프라 구축 예산의 20%를 이 지역 개발에 배정하여 2010년까지 에너지, 교통, 자원, 통신설비 개발 등에 142억불이 투자될 예정임.
 - 그 밖에 외국자본을 이용한 사할린-콤소몰스크-하바로프스크간 가스관 건설, 치타-하바로프스크간 자동차도로 건설, 시베리아 가스/석유관 연해 주까지의 확장 매설, 극동 항구 물동량 증가에 따른 처리설비 현대화, 보관창고 확대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자국산업 육성책 추진 및 불법 수출입거래 단속 강화
 - 산업생산이 2001년 5.5%, 2002년 3.7%, 2003년 상반기 7.2%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내 제조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국산 제품이 수입을 대체하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최근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고차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 수입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국 철강기업들의 고철자원 확보 및 불법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 고철 반출가능 항구 수를 대폭 제한하였음.
 - 또한, 자국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육류 및 가금류 수입쿼타제를 도입하

여 실제로 금년 7월까지의 식품 및 식품원료 수입 비중은 25.8%에서 2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밖에 국경에서의 보따리 무역상들의 불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 무관세 반입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고, 극동러시아 항구 세관원들의 통관심사가 대폭 강화됨.

【참고】 러시아 중고차 수입 관세

1000cc 미만	cc당 0.85유로
1000~1,500cc	cc당 1유로
1500~1,800cc	cc당 1.5유로
1800~2,300cc	cc당 1.75유로
2300~3,000cc	cc당 2유로
3000cc 초과	cc당 2.25유로

□ TSR-TKR 연결사업 본격 추진

- TSR-TKR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핫산-우스리스크간 240km 철도 현대화 공사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TSR 횡단 노선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담당하는 단일 통과화물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극동러시아의 대외교역 및 외국인 투자동향

(1) 대외 교역 동향

- 러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2002년 기준 대외 총 교역량은 미\$133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러시아 전체 교역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 동 지역 2002년 대외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2.8%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대외교역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수출품은 80%이상이 원자재로서 수산물, 목재, 석탄, 고철, 철강, 선박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화학제품, 벙커오일, 기계설비, 플라스틱 제품, 선박, 식품류 등임.

동시베리아·극동러시아 지역의 2002년 대외교역 현황
(단위 : 미\$백만)

구 분	2001			2002		
	수 출	수 입	교역량	수 출	수 입	교역량
연 해 주	1,259	522	1,781	993	811	1,804
하바롭스크	2,053	168	2,221	1,398	234	1,632
사하공화국	1,278	60	1,338	1,361	41	1,402
크라스노야르스크	2,511	531	3,042	2,743	421	3,164
아 무 르	66	22	88	71	24	95
캄차트카	398	172	570	337	88	425
마가단	50	67	117	67	59	126
이르쿠츠크	3,176	444	3,620	3,300	400	3,700
사 할 린	729	202	931	701	274	975
유태인자치주	10	4	14	8	4	12
계	11,530	2,192	13,722	10,979	2,356	13,335

【자료원】 연해주 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 발표자료

(2) 외국인 투자동향

- 각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는 2002년 누계기준 총 미\$ 4,244백만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의 10.6% 수준임.
- 사할린주 원유개발 프로젝트에 최대투자 금액 기록

-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미\$ 1,893백만을 투자하였으며, 극동지역 투자의 44.6%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이 미국에 이어 전체 극동지역 투자의 17.6%(미\$ 748백만)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8.4%, 미\$ 357백만)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은 미\$ 272백만을 투자하여 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음.

對 극동 러시아 국가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 : 미\$백만)

구 분	'98년말누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금 액	비중 (%)	금 액	비중 (%)	금 액	비중 (%)	금 액	비중 (%)	금 액	비중 (%)
미 국	716.1	48.0	1,020	94.1	105.9	29.9	40.3	7.8	11	1.4
일 본	183.7	12.3	15.9	1.5	99.9	28.2	193.7	37.4	254.8	31.9
영 국	152.9	10.3	10	0.01	2	0.6	71.1	13.7	121.4	15.2
화 란	-	-	-	-	-	-	106	20.5	165	20.7
바하마	-	-	-	-	-	-	52	10.0	177	22.2
한 국	130.2	8.8	37.3	3.5	44.4	12.5	32.2	6.2	28.3	3.5
중 국	11.6	0.8	5.03	0.4	3.5	1.0	0.7	0.1	15.1	1.9
계*	1,4901	100.0	1,084	100.0	354.6	100	517.5	100	797.8	100

【자료원】 각 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

(주) 2000년, 2001년, 2002년 투자통계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만 포함

다. 연해주의 최근 대외교역 및 외국인 투자동향

(1)지리적 여건

- 위치 : 러시아 극동 남부(북 : 하바로프스크, 서 : 중국, 남서 : 북한과 접경)
- 면적 : 165.9천 S/M(해안선의 길이 1,500Km), 산지가 전체면적의 2/3 점유

- 인구 : 2,124.7천명
- 주도 : 블라디보스톡 (648천명)

(2) 천연자원

- 주석, 텅스텐, 아연, 비소, 형석, 붕소 등 30여 종류의 천연자원 보유, 200개 대규모 광물자원 매장지 소재
- 한편, 비금속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일부 광산은 향후 10~30년 정도 채굴량을 보유하고 있음.
- Yaroslavsky Concentrating Plant 거대국영 제조업체가 러시아 전체 알루미늄 소요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채굴량은 360천톤임.
- 광산-화학협회인 Bor이 러시아 바론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DalPoli Metal 사는 아연, 납, 비소, 구리, 은 등을 생산하고 있음. Primorsky Concentrating Plant사는 텅스텐을 채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연해주의 광산업은 원료매장량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을 비철 금속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위기에 처해 있음.
- 산림자원 보유량은 1.8십억m³임.

(3) 산업 현황

- 산업생산량 : 1,635.3백만불(2002년)
- 주요 산업 : 식품/수산업(35.8%), 전력산업(28.5%), 기계제조 및 금속가공(10.0%), 목재가공 및 제지업(7.6%), 비철금속야금업(3.6%), 연료산업(3.6%), 전자재산업(2.8%) 등

(4) 대외교역

- 2002년 연해주의 대외교역 상대국은 CIS 지역을 포함 79개국에 달하고 있음.
- 연해주의 2002년 대외교역량은 US\$ 1,804백만불(전년대비 1.3% 증가)로 동부 시베리아/극동 러시아 전체 교역의 15%를 점유하고 있음.
-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33.7%), 한국(24.7%), 일본 (15.6%), 싱가포르 (8.6%), 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83%를 점유하고 있음.

연해주의 연도별 대외교역 규모 추이

(단위 : US\$백만)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역규모	1,956	2,019	1,450	1,231	1,376	1,781	1,804
수 출	1,246	1,148	910	864	996	1,259	993
수 입	710	871	540	367	380	522	811
무역수지	536	277	370	497	616	737	182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교역규모가 '97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98년 모라토리움 이후 급감(전년동기대비 28.8% 감소)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임.

연해주의 주요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US\$ 백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한 국	134	100	151	127	201	171	198	247
싱 가 폴	18	2	22	2	340	5	153	3
중 국	160	83	284	92	195	117	284	323
일 본	161	38	194	32	257	47	207	74
미 국	302	41	269	26	123	21	80	22
UAE	1	2	-	2	59	-		
독 일	38	18	25	13	26	21	9	15
베 트 남	10	2	10	2	14	21	11	15
사이프러스	4	1	0.2	0.4	20	2	7	8
태 국	3	13	1	12	0.1	17	0	1.3
우크라이나	0.1	5	3	15	0.2	13	0.6	3.6
호 주	3	6	0.3	3	0.1	10	0.1	7.9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한국은 2002년 중국에 이어 연해주 최대교역국으로 전체 대외교역의 24.7%를 점유하고 있음.
- 2002년 연해주의 주요 수출대상국(괄호안은 비중)
 - 중국(28.6%), 일본(20.8%), 한국(20%), 싱가포르(15.4%),
- 2002년 연해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괄호안은 비중)
 - 중국(39.8%), 한국(30.5%), 일본(9.1%), 미국(2.7%)
 - 한국은 '97년 이후 연해주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 유지

연해주의 주요 대외 수출 품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수산물	549	446	462	361
땅콩	-	7	13	19
아연	7	8	10	6
텅스텐	4	2	2	7
석탄	115	4	6	90
납	4	3.5	3	2
붕소	18	1	5	5
고철	42	48	44	42
비철금속	47	31	40	26
선박, 보트	48	17	13	31
승용차	2.5	0.2	0.7	-
철금속	10	11	35	26
의류	-	-	37	32
목재	140	171	157	148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2002년 통계 不備

연해주의 주요 대외수입 품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육류	63	21	3.4	24.1
토마토	3	2	2	1.8
수프, 야채류	4.7	6	5	5.8
사과, 배	7	5	6.4	6.8
꿀	5	3	3	2.8
차	7	7	7	5.4
쌀	10	31	29	15.9
설탕	39	13	12	16.7
마요네즈	6	5.5	5	4.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41	5	5.5	6.2
페인트	8	5	4	5.8
폴리머제품	15	-	14	39.2
합판	3	1.3	1	1.8
종이, 카드보드	1	0.9	3	2.2
의류	1.9	0.7	0.3	13
각종 기계류	50	40	30	43.6
전기전자제품	3	4	11	28
차량	35	16	15	12.2
선박, 보트	0.9	16	29	32.3
가구	5	2	1.4	1.7
철금속	8	6	3	7.7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2002년 통계 不備

- 연해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어류, 광산물, 목재, 철/비철금속, 바론 메탈,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식품 및 식품 원료, 가공오일, 석유화학제품, 운송설비, 기계설비 등임.

- 주요 교역업체로는 Primorsky Sakhar, DalmoreProduct(수산업), TerneiLes(목재), PrimorskyLesProm(목재), Bor, DaloPoliMetal(광물) 등이 있음.

(5)외국인 투자

□ 국별 외국인 투자현황

- 2002년 대 연해주 외국인 투자는 57.3백만불이며 이중 한국은 21.3백만불로 전체 투자의 37.2%를 점유하고 있음.
- 2002.1.1 현재 대 연해주 총 투자누적액은 340.4백만불이며 한국은 143.3백만불(42.1%)을 투자하여 제1투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한 국	34.8	23.3	20.6	43.4	30.6	21.3
일 본	18.3	13.1	15.9	11.8	29.7	19.8
미 국	16.1	3.4	4.4	12.0	38.9	8.0
싱 가 포 르	2.9	6.9	-	-	-	-
스 위 스	3.9	-	-	-	0.2	0.5
영 국	-	1.1	10.0	2.0	0.1	1.4
중 국	0.5	0.1	0.7	1.9	0.5	0.6
기 타	17.1	8.4	2.4	7.0	8.6	5.7
총 계	94.6	56.3	54.0	78.1	108.6	57.3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

- 2002년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목재가공 및 제지업에 대한 투자가 19.1백만불로 전체의 33.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텔업(12.9백만불), 운수업(7.2백만불), 섬유산업(4.8백만불), 통신업(2.8백만불), 식품산업(2.7백만불), 무역업(1.0백만불) 순임.

- 주요 외국인 투자 업체로는 Coca Cola Vladivostok Bottles, Skeet, Vladivostok Business Center, VostokTelecom, PrimTelephone 등이 있으며, 한국은 봉제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대 연해주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호 텔	-	13.0	17.6	36.9	14.9	12.9
식품산업	18.3	9.0	3.7	13.9	22.5	2.7
통 신	1.1	11.2	11.8	6.9	8.3	2.8
목재제지	17.3	11.3	12.1	10.7	26.3	19.1
운 송	17.8	7.4	5.2	0.3	1.6	7.2
총 계	94.6	56.3	54.0	78.1	108.6	57.3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연해주 행정부가 선정한 주요 유망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음.

- 광물가공업
- 보즈넨스코예 광산지역 재건 및 포그래니치노예 광산단지 개발
- 자루비노항 운송망 인프라구축
- 블라디보스톡 공항 인프라시설

(6)대외경제협력

- 92년 이후 연해주는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지방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과는 강원도와 자매결연 체결
- 연해주에는 현재 482개의 외국인 직접투자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 일본, 북한, 베트남, 인도 영사관 및 호주, 필리핀, 방글라데시 명예 영사관이 들어서 있음.

- 경제협력 현황
 - 한-러 극동 경제협의회(92년 설립)
 - 미-러 부통령간 미 서부-러 극동 경제협력 실무협의회
 - 일 홋카이도-러 극동 경제협의회
(일본측의 후원금으로 93년에 중소기업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
- 사회문화교류
 - 러-일 친선협회(94.12월 설립)
 - 블라디보스톡-도야마(일본) 친선협회(95.9월), 북러 친선협회

라. 하바로프스크 주의 최근 대외 교역 및 외국인투자 동향

(1)지리적 여건

- 위 치 : 러시아 극동의 남부지역
(중국, 사하공화국, 연해주, 마가단주, 유태인 자치지구 등과 접경)
- 면 적 : 788.6천S/M(한반도의 3.2배)
- 인 구 : 1,486천명
- 주 도 : 하바로프스크 市(610천명)

(2)천연자원

- 금, 플라티늄, 비철금속, 탄화수소, 건축자재, 광천수 등 40여 종의 천연 자원을 보유 (주석은 러시아가 제3의 매장지임)
- 주 북쪽지대에는 고함유량의 티타늄, 바나듐, 철 등이 매장되어 있음.
- 자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의 대규모 오일 및 가스 대륙봉이 있으며 매장량은 5~6십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경작면적 - 78,763천 헥타아르
- 삼림면적 - 62,030천 헥타아르
- 목재 채벌가능량 - 5.3 십억 큐빅미터

(3)산업 현황

- 산업생산량 : 2,528.5백만불(2002년)
- 주요 산업 : 기계제조 및 금속가공(42.7%), 전력산업(12.9), 목재가공 및 제지업(11.2%), 식품/수산업(10.3%), 비철금속야금업(9.6%), 연료산업(5.6%), 전자재산업(1.3%) 등
- 기계제조
 - 기계제조 분야는 주로 어선제조, 비행기, 디젤엔진, 절삭기계, 에너지 및 전기제품, 전선 및 기타 소비재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선박 건조지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Amursky Shipyard),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Shipyards "Oston"),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JSC "Nikolaevsky Shipyards"), 소비에트스카야 가반(JSC"Yakor", Northern Shipyards) 등에 위치해 있음
 - 항공산업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항공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음. 대규모 기계설비제조업체로는 DalEnergomash, Daldiesel, Amur-Cable, Electro Technical Plant 등을 들 수 있음. 금속가공업체로는 Amur Stal 을 들 수 있음.
- 금속가공 및 야금업
 - SolnechnyGOK사가 하바로프스크주 전체 주석생산의 98% 및 구리의 전량을 생산하고 있음. 알루미늄 가공업체로는 Vostok Metal사가 있으며 NizhneAmurZoloto, Amur, Vostok 사 등을 포함한 27개의 업체가 금 및 고가 금속제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음.
- 수산업 및 식품산업
 - 많은 합작회사와 27개의 수산업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97년 수산물 어획량은 240천톤에 달함. 이들 어류 및 수산물을 포함 연간 350천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10천톤의 식품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동 지역은 고기 및 낙농제품, 밀가루, 과자, 식용기름, 와인, 빵 제조에 종사하는 60개 이상의 식품관련 기업이 있음.

- 전력산업

- Khabarovsk Energo가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주 전기공급자로 화력발전량의 93%가 하바로프스크(1002MWt), 콤소몰스크나아무레(565MWt), 아무르스크(285MWt) 등 3개의 산업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음.

- 벌목 및 목재가공산업

- '97년 4.5백만 큐빅미터의 목재가공품을 생산함. DaLesProm, Forest-Starma, Vanino-Tairiku, Amursky Furniture and Wood-Processing Mill 등을 포함, 현재 350개의 벌목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연료산업

- 하바로프스크와 콤소몰스크-아무르에 연간 10백만톤의 가공오일을 생산하는 오일정제공장이 있음. 주요 석탄채굴기업으로는 Ural Ugol이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5백만톤에 이름.

- 운 송

- 하바로프스크주는 러시아 극동 운송망의 중추역할을 담당, 아무르강 철도 교 각 건설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병목현상 해소

- 철 도

- 하바로프스크 지역을 가로질러 러시아 중부와 서부를 잇는 2개의 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아무르 철도)가 있음.

- 해상교통

- 강의 총길이는 3.2천km에 달하며 해상운송을 통해 중국 및 사할린, 아무르주 등지로 물류를 운반함.
- 하바로프스크주의 해상관문은 바니노항으로 매년 1700여 운송선이 이용하고 있음. 이밖에도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 라자레프, 소비예트스카야 가반 등의 항구가 있으며 항구 재건사업은 유망 프로젝트중 하나임.

- 항 공
 -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신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40개 이상의 국내노선을 가지고 있고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과 노선을 가지고 있음.
- 도 로
 - 도로의 총 길이는 4.3천km이며 99년에는 리도가-바니노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하바로프스크와 콤소몰스카야나아무레를 바니노항과 연결하고 있음.
- 통 신
 - 최근 하바로프스크는 위성통신망을 도입, 일본, 한국, 중국 등지와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음.

(4)대외교역

□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백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역규모	983.2	1,301	753	1,457	2,220.8	1,666.8
수 출	695.7	1,109	596	1,316	2,053	1,427.7
수 입	287.6	192.3	157	141	167.8	239.1
무역수지	408.1	916.7	439	1,175	1,885.2	1,188.6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정부 대외경제국

- 2002년 하바로프스크주의 대외교역량은 1,666.8백만불로 전년대비 24.9%가 감소하였음.
- 수출은 30.5% 감소한 1,427.7백만불, 수입은 42.5% 늘어난 239.1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 국별 대외교역현황 (2002년)

(단위 : US\$백만)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628.4	44.0	72.3	30.2	700.6	42.0
2	싱가포르	254.0	17.8	1.7	0.7	255.7	15.3
3	일본	141.3	9.9	57.3	24.0	198.6	11.9
4	스위스	129.2	9.1	2.7	1.1	131.9	7.9
5	한국	73.3	5.1	21.6	9.0	94.9	5.7
6	버지니아 아일랜드	78.6	5.5	0.5	0.2	79.1	4.7
7	오스트리아	52.7	3.7	2.8	1.2	55.5	3.3
8	미국	17.5	1.2	15.6	6.5	33.1	2.0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정부 대외경제국

- 주요 교역국가는 중국이 42.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15.3%), 일본(11.9%), 스위스(7.9%), 한국(5.7%)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주요 대외수출 품목

-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36.8%), 기계류(25.2%), 목재(23.6%), 철금속(3.8%), 수산물(3.7%) 등임.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기계류	359.9	1,219.9	413.2	69.2
원목	318	278.1	210.3	197.5
제재목	19	12.5	12.8	9.7
철금속	54.1	42.1	49.3	192
고 철	11.8	10.1	15.9	7.9
구 리	-	0.7	15.9	17.9
주 석	-	1.2	4.2	2.2

구 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텅스텐	0.3	0.5	0.16	1
석유제품	525.8	332	386	114.3
비철금속	9.4	8.2	11.9	11.2
수산물	53.3	58.9	69.2	33.7
총 계	1,427.7	2,053	1,316.1	595.9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정부 대외경제국

□ 주요 대외수입 품목 (2002년)

(단위 : 백만불)

구 분	금 액	비 중(%)
기계설비류	67.1	28.1
전기기기	33.5	14.0
운송수단	20.1	8.4
육 류	17.9	7.5
의 류	6.7	2.8
철금속제품	4.5	1.9
플라스틱제품	3.5	1.5
쌀	3.4	1.4
편직의류	2.9	1.2
석유 및 석유제품	2.3	1.0
실	1.8	0.8
사과, 배	1.8	0.8
종이 및 카튼 박스	1.4	0.6
과, 마늘	1.3	0.6
유리 및 유리제품	1.3	0.5
토마토	1.2	0.5

(5)외국인 투자

□ 국별 외국인 투자 현황

- 2002년 외국인 투자 총액은 33.3백만불로 집계됨.
- 주요 투자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이며 중국이 전체 투자액의 43.4%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US\$ 천)

구 분	2001	2002
중 국	199.9	14,485.6
미 국	705.1	2,637.8
일 본	5,834.4	2,169.5
한 국	4.8	36
스 위 스	0	6.6
기 타	13,148.8	14,006
총 계	19,893	33,341.6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정부 대외경제국

□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US\$ 천)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목재가공산업	5,743	22,528	12,781	7,318.9	18,940.4
철강산업	-	7,603	8,671	10,500	13,900
식품산업	-	987	3,500	-	-
경공업	-	-	1,550	199.9	59.9
광산업	1,383	912	592	370.4	-
운수업	25,090	1	90	1,451.5	270.8
무역업	3,552	60	4.6	-	-
의료산업	4,290	1,126	-	-	-
서비스업	-	-	-	52.3	170.5
총계	40,092	33,228	27,203	19,893	33,341.6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정부 대외경제국

- 2002년도 분야별 대 하바로프스크 외국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목재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19백만불로 전체투자의 5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13.9백만불, 운수업 0.3백만불 순임.

(6)대외경제협력

- 하바로프스크주는 미국의 알래스카, 오레곤주, 일본의 효고, 아오모리, 홋카이도, 중국의 헤이룽창, 랴오닝, 한국의 경상남도, 베트남의 하이퐁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경제협력 현황
 - 한-러 극동 경제협의회(92년 설립)
 - 미-러 부통령간 미 서부-러극동 경제협력 실무협의회

마. 우리나라와 극동 러시아간 교역 및 투자 현황

(1) 한국의 對 극동 러시아 수출

- 한국의 2002년 대 극동 러시아 수출액은 미\$ 296백만 정도이며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사할린주가 주요 판매 시장임.
- 극동 러시아 수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해주(83.5%)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은 '93년 이후 매년 급증하여 '97년에는 미\$ 187백만에 달했으나, '98년은 모라토리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9.6%나 감소한 미\$ 113백만, '99년에도 12.6% 감소한 미\$ 100백만에 그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러시아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은 미\$ 127백만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 171백만으로 34.7%, 2002년에는 미\$ 247백만으로 최근 7년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전년 대비 44.6% 증가)

- 주요 수출품은 직물류,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식품류, PVC제품, 종이 판지, 중고차, 페인트, 라커, 의료기기 등임.

최근 우리나라의 對 극동 러시아 수출 실적

(단위 : 미\$백만)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연해주	143.4	187.0	113.0	100.0	127	171	247.2
하바롭스크	31.2	32.1	24.1	10.9	14	21	21.6
사하공화국	12.0	4.3	1.9	3.2	N.A.	0.3	0.5
아무르	-	-	2.2	-	0.1	0.14	0.1
캄차트카	43.3	91.1	115.0*	22.8	12.6	8	6.0
마가단	5.1	1.4	31.8*	0.2	N.A.	N.A.	N.A.
사할린	80.0	93.1	296.0	16.8	15.2	14.4	20.7
합 계	315.0	409.0	584.0	152.2	168.9	214.84	296.1

【자료원】 각 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 발표자료

(2) 한국의 對 극동 러시아 수입

- 2002년 우리나라의 대 극동 러시아 수입규모는 연간 미\$ 611백만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음.
- 극동 러시아 지역 중 수입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할린주(43.2%)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목재, 수산물, 고철, 석탄, 아연피 및 광석, 붕산, 납 피 및 광석, 선박류 등임.

최근 우리나라의 對 극동 러시아 수입 실적

(단위 : 미\$백만)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연해주	163.4	179.3	105.0	134.0	150	201	198.1
하바롭스크	50.0	65.3	100.4	54.7	61	N.A.	73.3
사하공화국	15.0	18.3	5.6	24.6	N.A.	5.4	16.1
아무르	2.1	2.6	0.2	-	0.8	0.86	0.77
캄차트카	47.0	27.8	49.0	53.0	48.2	61.9	58.6
마가단	1.4	5.9	9.7	10.9	N.A.	N.A.	N.A.
사할린	50.0	106.3	31.0	46.1	57.0	362.6	264.2
합 계	328.9	405.5	300.9	324.9	317	631.8	611.1

【자료원】 각 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 발표자료

한국-연해주간 교역 현황

(단위 : US\$백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역규모	366	218	234	278	372	445
수 출	187	113	100	127	171	247
수 입	179	105	134	151	201	198
무역수지	8	8	-34	-24	-30	49

【자료원】 연해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모라토리움 이후 한-연해주 교역량은 대폭 감소하여 '98년도의 경우 218 백만불로 전년대비 40.7%가 감소하였음.
- 하지만 99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최근 4년간 한-연해주 교역량은 연평균 19.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02년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US\$49 백만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한국-하바로프스크주간 교역 현황

(단위 : US\$백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역규모	97.4	124.5	65.6	75	82	94.9
수 출	32.1	24.1	10.9	14	21	21.6
수 입	65.3	154	54.7	61	61	73.3
무역수지	-33.2	-129.9	-43.8	-55	-40	-51.7

【자료원】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대외경제국

- 한국의 대 하바로프스크주 교역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98년말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을 기점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2000년 러시아의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한국의 대 하바로프스크 교역량은 94.9백만불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으며,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51.7백만불에 달함.

(3) 한국의 對 극동러시아 투자동향

- 한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는 연해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투자액은 2002년 말 누계 기준 미\$ 225.7백만(28.7%)으로 투자규모 1위국에 랭크되어 있음.(영국이 미\$ 166.4백만으로 2위, 일본이 미\$ 119.1백만으로 3위임)
- 한국의 IMF사태 이후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겹쳐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의 대 극동 러시아 진출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
 -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모라토리움 이전대비 4배 하락)는 물론, 한국으로부터의 신속한 원부자재 조달, 미국 등 최종 소비시장에의 적기 납품, 봉제업의 쿼타 미적용 등의 유리한 점이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 검토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부상
 - 특히, 의류 제조분야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성한물산을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블라디보스톡 인근지역에서 의류를 제조,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또한, 한국통신은 최근 연해주지역의 낙후된 통신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지법인(NTC)을 설립하여 이동통신 및 고속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사할린 및 하바롭스크주로 추가 투자 진출 예정임.

對 연해주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US\$ 백만)

구분	~95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누계
한국	4.5	5.8	41.4	34.8	23.3	20.6	43.4	30.6	21.3	225.7
영국	116.4	21.4	14	0	1.1	10	2	0.1	1.4	166.4
일본	9.9	0.3	0.3	18.3	13.1	15.9	11.8	29.7	19.8	119.1
미국	10.1	13.7	9.3	16.1	3.4	4.4	12	38.9	8	115.9
싱가포르	24.8	7.8	10.8	2.9	6.9	0	0	0	0	53.2
스위스	0	0	4.3	3.9	0	0	0	0.2	0.5	8.9
중국	4.9	0.7	0.1	0.5	0.1	0.7	1.9	0.5	0.6	10
기타	16.8	3.7	16.4	17.1	8.4	2.4	7	8.6	5.7	86.1
총계	187.4	53.4	96.6	93.6	56.3	54	78.1	108.6	57.3	785.3

【자료원】 연해주 주정부 대외경제위원회 발표자료

(4) 극동지역의 對韓 투자

-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연해주 소재 은행의 한국내 지점 설치 검토 등이 추진 중

(5) 한국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현황

- '98. 8월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후 현대종합상사, 현대상선, 대우, LG상사, 고합 등 대기업 지사 상당수가 폐쇄되었으나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현지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연해주에 50개사가 활동하고 있음.

업종별 진출 현황

업종	회사명
무역업(17)	극동개발, 다우스틸, 롯데상사, 비료자퍼시픽, 삼성전자, 신라, 아쿠아보스톡, 인사이트, LG전자, 세븐마운틴, 한국야쿠르트, 록키, 파낙스, 남양알로에, APB(수산), 동양제과, Falcon Crest
봉제업(22)	S.H.INT'L, 세인트, 아로스, PANTEX, 코맥스, 영진, 월드, 신우, 삼일, 세진, SUN, 코러스, 뉴맥스, 성진, PANKO, J&R, J.M.INT'L, 미시간, 미진양행, 고려, 동보어패럴, 선일(Rich Apparel)
제조업(1)	휘닉스(가구업)
서비스업(4)	현대호텔, NTC(이동통신), 보스톡익스프레스(여행업), 포토센터(사진관, PC방)
운송(6)	대한항공, 삼영익스프레스, 동서로지스틱스, SK해운, 자유해운,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보시토치니)
농업(1)	신성산업(버섯재배)

- 러 극동지역은 연해주를 제외하고는 하바로프스크에 6~7개사, 캄차트카 3~4개사, 사할린 10여개사, 이르쿠츠크 1~2개사 등 소수 한국기업이 러 극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2. 극동 러시아 시장특성

□ 시장 수요의 분산

- 極東러시아 및 東시베리아 지역은 면적이 러시아 전체의 60.5%로 매우 광활하나, 인구는 11.3%에 불과, 수요가 분산되어 있음.

지역구분	면적(천km ²)	구성비 (%)	인구(천명)	구성비 (%)	비 고
極東러시아	6,215.9	36.4	7,038	4.9	6州, 1공화국
東시베리아	4,122.8	24.1	9,207	6.4	3州, 2공화국
소 계	10,338.7	60.5	16,245	11.3	9州, 3공화국
全 러시아	17,075.4	100.0	143,954	100.0	

【자료원】 하바로프스크주 국가통계위원회(2002. 1. 1 기준)

- 붓짐상(Shuttle Trader)들의 물품 반입, 면세(선원용 물품, 구호단체용 물품들을 구입하여 시중에 유통) 및 밀수품 범람으로 정상적인 시장구조 형성이나 수요의 結集이 곤란

□ 자원개발 중심, 대부분의 공산품 수입에 의존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금, 다이아몬드, 목재, 수산물 등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주종
- 제조분야는 군수산업에 치중, 일반 소비재 제조기반 취약, 사회주의 경제 체제 붕괴이후 수입 의존도 심화(전자제품, 식가공품, 건자재, 자동차부품, 의료용품 등)

□ 동북아 경제권과의 보완적 관계에 의한 협력확대

- 중국의 동북3성, 한반도, 일본열도, 미국 알래스카주 등 소위 동북아 경제권과의 하나의 물류권 형성, 시장경제 정착과 운송비 현실화로 유럽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교역규모 확대
 -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중고가품, 기술, 자본 유입
 -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

- 중국으로부터 저가품 소비재 및 농산물 수입
- 한국, 일본 및 미국으로 자원 공급 증가

□ 비정상적 거래방식 보편화

- 금융기관 부실로 통상적인 대금결제 방식 곤란 ; L/C사용 기피, 무자료 거래, 가격 Undervalue (통상 10~30%)가 일반적
- 무역거래시 신뢰도 구축에 많은 시간 소요
- 각종 행정관청의 비능률, 비리가 만연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 비효율성 발생
- 내수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美 달러화가 대금결제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은행예금보다는 달러 보유를 선호

3. 진출상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극동러시아 진출상의 문제점

□ 『규모의 경제』 형성이 곤란

- 광범위한 지역(러시아 총면적의 60.5%)에 소수의 인구(총인구의 11.3%)가 분산되어 있으며, 서부러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일정 규모의 주문량 확보가 어려우며, 소량 다품종의 봇짐상(Shuttle Trader)식 주문이 지배적
- 아울러 유통 구조상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러시아를 경유해 상품이 유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러시아 극동(연해주)의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구 분	월 평균소득	인구비중	비 고
빈곤층	70불 이하	42.8%	· 연금생활자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계층 · 전체소득의 64%를 식품구입에 지출, 나머지는 비누, 치약, 양말 등 생필품 구입에 소비
중류층	70~250불	40%	· 전체소득의 59-61%를 식품구입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비식품류 수입소비재에 지출할 능력이 있음.
상류층	250~800불	11.3%	· 의류구입이나 미용 등의 문화생활을 wmf 기는 계층 · 연해주 이외의 지역으로 연간 1회 정도의 휴가를 보냄.
부유층	800불 이상	5.9%	· 자녀 교육비의 비중이 높고, 시중 가격보다 2~3배 가량 비싼 수입제품들을 구입하며 대만 등지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함. · 부유층의 소득수준은 빈곤층 절반인구의 소득합계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수입산에 대한 구매력이 높음.

【자료원 : Konkurent지】

□ 수출물품 통관상의 어려움 및 통관 비리로 인한 경쟁력 저하

- 세관통관 규정 및 세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세관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관세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통관이 어려운 실정
- 모스크바와 중국 국경지역 등지로부터 음성적으로 유입되어 오는 물품들이 극동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수출가격이 경쟁력이 있더라도 현지 최종 도착가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

운송비용이 높아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부산-블라디보스톡) 및 항공운송(서울-블라디보스톡) 비용이 너무 높아 가격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L/C방식 보다 T/T, 현금거래, 외상거래 방식 성행

- 경화부족 및 금융제도 미흡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실거래 금액보다 낮추어(Undervalue)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관행화
- 처음에는 선금지불 방식의 거래가 진행되지만, 이후부터 대부분 D/A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 상존 (수출대금 미수 사례 종종 발생)

나.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거래 초기부터 D/A거래는 사양한다.

- 바이어와 상담시 처음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처음부터 외상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회 현금거래를 하다가 D/A거래를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외상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Undervalue를 수용할 경우 근거 서류를 충분히 확보한다.

-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상품의 안전도 검사 등 러시아법규에 의해 수입상품에 대한 증빙서 첨부이 필수적인데 각종 증빙서 입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 등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4. 극동 러시아 지역 진출전략

가. 시장개척 전략

- 소량다품종 오더의 능동적 수용 체제 구축 및 최대한 납기 단축
 - 품목별 전문수입상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아 소량 다품종 오더 수용체제 구축
 - 바이어들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물품납기를 최대한 단축
 - 러시아는 수입보증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수입시 수입대금(선수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여야 함.

검토 방안

극동러시아 시장 물류센터 설립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을 중심으로 극동러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들간에 협력체를 결성
- 공동 협력하에 블라디보스톡 내에 대형 창고를 임차
- 컨테이너 화물 선적 및 운송, 보관 등 일괄 관리
- 관리인 선임을 통해 스톡세일 관리

□ 수출대금 결제조건의 단계적, 선별적 완화

- 최소한 50% 선수금, 50% D/A 조건 수락 검토 필요
- 신뢰 관계가 구축된 경우, 30% 선수금, 70% D/A 인정

□ 통관 경쟁력 있는 바이어 물색

- 러시아는 각종 상품의 품질인증 및 통관상 애로가 많아 통관 경험이 많고 문제 해결능력 등 경쟁력이 있는 바이어 확보가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관건의 하나

□ 현지 판매법인 설립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 강화

-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신흥 부르조아 계층(新러시아인) 공략
- 중장기적 시장접근 전략과 비즈니스 규모확대를 위해 현지 유통망 직접 침투 필요
-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러시아 해안 도시에 판매거점을 마련, 극동 러시아 및 시베리아 내륙 중심 지역으로의 판매망 확대

□ 소규모 투자를 통한 수출유발 효과 거양

- 일반 소비재 및 서비스분야에의 소규모 생산설비 이전, 투자를 통한 관련 부품 등 기자재 지속 수출
- 중소기업형 산업생산 설비이전 투자
 - 중고설비, 사양산업설비 및 유희설비 수출 및 이전

□ 바이어와 동반 성장하는 Win-Win 마케팅 전개

- 빅 바이어의 부재로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에서 탈피
- 바이어와 동반 성장하여 시장 수요 창출 확대
 - 소량오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품 판매전략을 초월, 전시품 발송 및 상품홍보물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바이어와 동반 성장하여 시장수요 창출을 확대

나. 중장기 진출전략

□ TSR 주요도시 상권 개척 강화

- 한반도 철도의 TSR연결에 대비하여 극동·시베리아 주요도시 순회 전시·상담회를 개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TSR 주요도시에 대한 상권 개척을 강화
 - 하바로프스크市와 야쿠츠크市 순회 전시·상담회
 - 이르쿠츠크市와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순회 전시·상담회 개최 등
- TSR 시장개척유망 거점도시에 직매장 설치 (도소매점)
- 야쿠치야,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극동·시베리아 내륙도시 중심
 - 유통망 직접 침투 차원에서 전개

□ 산업설비 및 플랜트수출 확대

- 연불 수출금융 활용을 통한 산업설비 및 플랜트 수출
- 선박수리 및 소형 신규 선박 수주

- '98년 8월 부분적인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 내수 산업 진출을 위한 사양산업설비, 유희설비, 중고설비 등 수출기회 포착
- '03년 9월 대러 경험차관 채무재조정 합의 이후, 수출입은행의 대 러시아 전대차관 공여가 다시 가능하게 된 점을 활용, 적극 진출 노력 필요
 - Rosbank 3천만불, Alfa Bank 5천만불 공여 계약 체결
 - 추가로 Gazprombank, MDMBank 등에도 약 8천만불 규모의 전대차관 협상 추진 중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전개를 통한 교역규모 확대

- 자원개발 투자 확대
 - 지리적 이점과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인 지역특성을 감안, 적극적인 자원개발 투자
 - 각 지방정부마다 개발 수요는 갖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착수하고 있지 못한 프로젝트가 다수
 - ※ 첨부 참고 자료 참조 [극동러시아/동시베리아 개발프로젝트 현황]
 - 컨소시엄 및 개별기업 형태로의 투자
 - 천연가스, 원유개발 (컨소시엄 구성 개발)
 - 석탄, 목재, 어획 및 수산물 가공 (개별 기업 투자)
 - 플랜트 등의 부수적인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자원개발 투자는 적극 추진 필요
- 사회 간접설비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투자
 - 공항, 항만, 도로, 통신, 주택 등 각종 사회간접 설비 개발 프로젝트 참여
 - 기존설비 개체 및 신규 시설설치시 중장기 연불수출 자금활용
- 한·러·북한/중국 3국간 협력사업 추진
 - 연해주 등 극동 러시아에서의 농업, 수산업, 목재산업 및 각종 자원개발 사업과 구소련 러시아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북한의 각종 중화학공

장 재가동 사업 등에 3국간 협력사업을 전개.

- 러시아는 자원, 엔지니어 및 일부 장비를, 한국은 자본, 기술, 판매를, 북한이나 중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사업이 바람직

다. 교역확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 대러 수출보험 부보범위 확대와 인수조건 완화

- 대러 수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수출보험 부보범위 확대
- 수출보험 인수은행 확대 및 인수조건 완화

□ 한·러간 해상 및 항공 운송비 인하

- 부산-연해주간 독점 해운사 운영허용에 따른 해상운임이 지나치게 높음. 복수선사 허용으로 운송비 인하 및 서비스 개선
- 한국-극동러시아간 운항중 항공사의 항공임과 항공화물 운임이 너무 높아 붓짐무역과 항공편을 통한 수출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EDCF 자금 지원 대상국에 러시아 포함

- 산업설비 및 플랜트 수출과 항만, 공항, 도로 등 SOC사업, 자원개발사업 등에 EDCF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도 동 자금지원 대상국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러시아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종 지원자금 대상국에 러시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유망 수출 상품별 진출전략

가. 현재 유망품목

- 자동차 부품(오일, 필터, 배터리, 타이어, 벨트 등)
 - 러 극동은 중고차가 전체 자동차시장의 90% 이상을 점유, 자동차부품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러 극동지역은 도로사정 및 기후가 열악하여 소모성 부품의 교체가 빈번하여 자동차 소모품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연해주의 중고 자동차 및 부품시장은 연 5천 7백만불로 이중 대한 수입은 약 11%인 6백 5십만불임.
 - ☞ 일제중고차가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차량 부속품의 경우 일제차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출 모색 필요.
- 가전제품(TV, DVD플레이어, VCR, 오디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한국산 가전제품은 유럽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모스크바 등 서부 러시아에서와는 달리 LG, 삼성 등의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며, 품질과 기술적이면에서 오히려 일본산이나 유럽제품에 비해 우월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산은 현재 러 극동 전체 가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어컨의 경우 70%)
 - ☞ 모라토리움 이후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며 DVD플레이어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사무용 문구류(볼펜, 파일, 화이트, 키트, 노트, 메모용 스티커 등)
 - 각종 서류파일, 볼펜, 사무용 문구류의 경우 값싼 중국산, 일본산, 유럽산 등이 경쟁중임.(연해주 월 내수시장 규모 미\$ 80~100만불)
 - ☞ 한국산은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해 지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

○ 1회용 주사기, 수혈용품

- 의료용품이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 1회용 주사기, 수혈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음.
-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품질 및 가격경쟁력, 지리적 인접성 등 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의 호응도 및 인지도가 높음.

○ 인스턴트 식품 및 제과류(라면, 커피 등)

- 다차(야외 농장)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1회용 커피,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마요네즈, 스낵, 초코파이 등 제과류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음.
- ☞ 러 극동은 아직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 러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저가의 대중제품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식품용 소스류(마요네즈, 식용유 등)

- 한국산 마요네즈나 케첩의 경우 품질 및 가격면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초기부터 진출한 한국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시장 전망이 밝은 편임.
- ☞ 마요네즈, 식용유, 간장 등 일부 식품류는 현지 생산이 시작되어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해결과제임.

○ 사무용 가구류

- 이태리, 독일산 등 유럽산 수입제품과 한국산이 경쟁관계에 있으며, 모라토리움 이후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 자국산 가구류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루블화가 평가절하된 이후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현지투자진출 등을 검토할 단계임.

나. 향후 수요확대 예상 품목

○ 건축내외장재(벽지, 단열재, 패널, 수도꼭지, 욕조, 장판, 파이프, fitting)

- 교외 별장 붐이 일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로 건물 내부수리 및 개조 등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 수전금구, 타일, 패널, 바닥장식재 등 건축자재의 수요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수전금구는 수입산이 시장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음, 연해주의 지난해 대한 건축자재 수입액은 약 5백만불임)

☞ 특히 내외장재로 쓰이는 패널은 알미늄 제품이 대거 진출하였으나 현재는 다소 인기를 상실하였고, 목재제품의 경우 천연소재나 천연 문양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 중고컴퓨터

- 러 극동은 불과 1~2년 사이에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컴퓨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 중고 컴퓨터의 수요가 늘고 있음.

☞ 인터넷의 경우 러시아 전체 이용자의 25%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고 컴퓨터는 베틀시장 등에서 인기가 매우 높음.

○ 컴퓨터 주변기기(스피커, 액세서리, CD-ROM 등)

- 컴퓨터 사용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변기기에 대한 수요도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산의 경우 CD-ROM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스피커 등 일반 주변기기에서는 대만, 중국산 등의 진출이 활발해 다소 열위에 놓여 있음.

☞ 러 극동지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브랜드 제품이 아닌 조립품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여지가 많은 분야임.

○ 보일러 및 부품

- 러 극동은 중앙난방이 전체 난방설비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 되어 있음.
- ☞ 난방설비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일러, 보일러 연결부품, 라디에이터 등의 수요가 많음.

○ 페인트(도로용, 가정용)

- 도로용 페인트 및 건물내부 장식용 페인트 등 각종 페인트의 수요가 꾸준하며, 대부분의 제품이 모스크바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페인트는 직수입이 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
- ☞ 한국산 페인트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임.

○ 식품가공, 포장원료 및 기기

-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시장은 유럽, 아시아, 미국산 기계류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 극동지역의 식품가공 기계 시장점유율은 독일 35%, 이태리 35%, 미국 10%, 한국 10%, 중국 5%, 일본 5%를 점유하고 있음.
- 포장생산용 원자재 소비는 70% 정도를 수입산이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폴란드, 이태리 및 독일 등이 주요 수입국임. 전체 소비량중 품목별 수입산 포장재료의 비중은 레이블 페이퍼 48%, 카드보드 20%, 납지 83%, 반납지 72%, 파라핀지 30%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연해주의 라벨, 카튼 박스 등 포장기자재 수입규모는 약 5백만불로 대한수입액이 2백 2십만불임)
- ☞ 최근 식료품 산업 및 원자재 가공생산이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포장기기 및 포장용 원자재의 생산이 별무하고, 푸친정권 발족이후 자국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관련 설비 및 원자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쇄물 및 인쇄기기(광고용 인쇄기기, 일반 서적 인쇄기기)
 - 광고가 마케팅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광고판이나 가두용 광고 인쇄기기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각종상품의 라벨링을 비롯한 일반 서적(브로슈어) 출판용 인쇄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 일반 인쇄물의 경우 연해주 시장의 50% 정도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핀란드, 일본, 미국 등이 시장진입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음.

- 점포 입점용 설비(냉동고, 선반 등)
 - 최근 러 극동은 서구형태의 유통망이 들어서면서 체인점이나 대리점 형태의 마가진(상점)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유통망 정비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냉동 보관하는 냉동고 및 상점내부의 진열대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컴퓨터 모니터
 -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러 극동지역의 경우도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View sonic사 제품과 더불어, LG, 삼성 모니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TFT-LCD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
 - ☞ 한국산 모니터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10-15% 저렴한데 반해 품질이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산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음.

별첨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프로젝트 진출 기초조사

1. 하바로프스크 주

1.1.

- 프로젝트명 :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제1단계)
(사할린-콤포몰스크-하바로프스크)
- 발주처 : PJSC «Daltransgas»
- 시행 시기 : 2000년 8월 승인, 이미 90km 이상 건설 완료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81.7
- 홈페이지 : 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2.

- 프로젝트명 : 북서 우르갈(Northwest Urgal) 광산 개발 프로젝트
- 발주처 : PJSC "Urgal-Ugol"
- 시행 시기 : 현재 조사 및 탐사 작업이 진행중이며, 시행시기는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9.1
- 홈페이지 : 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3.

- 프로젝트명 : 알가민스키(Algaminsky) 지르코늄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Georos" mining company
- 시행 시기 : 미정 (타당성조사 1998년 완료)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0.5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4.

- 프로젝트명 : Vanino-Lidoga 광선 전화 통신 시스템 개발
- 발주처 : "Poseydon-Svyaz" Ltd.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47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5.

- 프로젝트명 : OSB 패널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Amursk 가구/목재가공 공장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5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6.

- 프로젝트명 : 다목적용 선박 건조 프로젝트
- 발주처 : 국영기업 "Khabarovsk Shipbuilding yard"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45.6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7.

- 프로젝트명 : 광케이블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Amur Cable Plant (Amurcabel)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9.45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8.

- 프로젝트명 : Komsomolsk-on-Amur 지역 강관 생산 공장 건설
- 발주처 : "Amurstal-Profil" JSC
- 시행 시기 : 미정 (동 계획은 1999년 Dalinvest社가 수립)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48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1.9.

- 프로젝트명 : 하바로프스크 호텔 콤플렉스 건설
- 발주처 : Design institute "KhabarovskGrazhdanProject"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하바로프스크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53 (1,000室 규모)
- 홈페이지 : <http://www.adm.khv.ru/invest2.nsf/folders/Invest-en.htm>

2. 사할린 주

2.1.

- 프로젝트명 : Nogliki 발전소 건설
(123 MW 규모 전력생산 및 60 Gkal/h급 난방용)
- 발주처 : JSC «Nogliki electric power plant»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노글리키(Nogliki)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44.4

2.2.

- 프로젝트명 : 쿠릴지역 전력공급 프로젝트 2006
- 발주처 : 쿠릴지역 행정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주 쿠릴지역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6.8

2.3.

- 프로젝트명 : 한천(寒天, agar) 생산 및 가공공장 재건
- 발주처 : JSC «Binom center»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42

2.4.

- 프로젝트명 : glue timber 생산
- 발주처 : JSV «Dary Morya»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2

2.5

- 프로젝트명 : 목재가공 공장 건설
- 발주처 : JSV «Continent»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주 Kholmsk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162

2.6.

- 프로젝트명 : 식품 및 수산물 가공산업용 포장재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JSV «Evrika-2»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2

2.7.

- 프로젝트명 : Basalt Fiber 제품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JSV 《Construction detail》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사할린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35.0

3. 부라치야 공화국

3.1.

- 프로젝트명 : Goudzhekit 석영(石英)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JSC 《Trade Quartz Sakhyur》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6.2

3.2.

- 프로젝트명 : Ozernoe 지역 복합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부라치야 공화국 정부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40.0

3.3.

- 프로젝트명 : Oseneye 지역의 Fluoride 광상(鑛床) 시굴 및 채광
- 발주처 : Cristal Co., LTD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3

3.4.

- 프로젝트명 : Cheremshansk 석영(石英) 채석장 개발
- 발주처 : JSC Cheremshansk Quartzite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4

3.5.

- 프로젝트명 : 모니터 제조공장 건설
- 발주처 : JSC White Swan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1.2

3.6.

- 프로젝트명 : Deep wood processing 공장 건설
- 발주처 : Im Timber CO., LTD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5

3.7.

- 프로젝트명 : 콘크리트 절연재 생산 공장 건설
- 발주처 : JSC Darkhaninveststroi
- 시행 시기 : 미정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1

4. 이르쿠츠크 주

4.1.

- 프로젝트명 : OSB 패널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JSC Yantarles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이르쿠츠크 주 우스트쿠츠키 구 안타르 거주지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2.8

4.2.

- 프로젝트명 : Kovikta 지역 가스 개발
- 발주처 : JSC Russiya Petroleum
- 시행 시기 : 2003년
- 시행 지역 : 이르쿠츠크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3
- 참고사항 : 중국 및 한국이 주요 수입국

4.3.

- 프로젝트명 : 샌드위치 패널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Shelehovskoye upravlenie VSAM Co., LTD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이르쿠츠크 주 셸레호프(Shelekhov)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2

4.4.

- 프로젝트명 : 식품포장재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이르쿠츠크 화학연구소 SO RAN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이르쿠츠크 주 셸레호프(Shelekhov)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8

4.5.

- 프로젝트명 : 호텔 콤플렉스 건설
- 발주처 : JSC Baikal Hotel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이르쿠츠크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5

5. 유타인 자치주

5.1.

- 프로젝트명 : 토탄(土炭) 생산 설비 건설
- 발주처 : 지역문제 복합분석 연구소
(Institute of complex analysis of regional problems)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irobidzhan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0.6

5.2.

- 프로젝트명 : Birakatskoe talcoid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주정부 천연자원개발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irobidzhan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5.0

5.3.

- 프로젝트명 : Souznoye 흑연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주정부 천연자원개발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irobidzhan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30.0

5.4.

- 프로젝트명 : Uzhno-Hinganskogo 망간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주정부 천연자원개발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irobidzhan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40.0

5.5.

- 프로젝트명 : 러-중국간 아무르강 교량 건설
- 발주처 : 주정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irobidzhan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20.0

6. 캄차트카 주

6.1.

- 프로젝트명 : 인터넷망 확충 프로젝트
- 발주처 : FUSC PTPS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캄차트카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0

6.2.

- 프로젝트명 : 가스관 건설
(Nizhne-Kachinsk - Petropavlovsk Kamchatskiy)
- 발주처 : 주정부 천연자원 개발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캄차트카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50.0

6.3.

- 프로젝트명 : Yagodinskoye 비석(沸石)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Ceolite CO., LTD
- 시행 시기 : 2003년
- 시행 지역 : 캄차트카 주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2.2

7. 아무르 주

7.1.

- 프로젝트명 : Bolshoy Seym 지역 철 티탄 광상 개발
- 발주처 : OOO Olekminskiy rudnik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lagoveshensk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50.0

7.2.

- 프로젝트명 : Garinskoe 철 광상(鑛床) 개발
- 발주처 : 주정부 천연자원개발부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lagoveshensk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120.0

7.3.

- 프로젝트명 : 양조공장 재건
- 발주처 : JSC Dalnevostochnaya prodovolstvennaya company
- 시행 시기 : 미정
- 시행 지역 : Blagoveshensk
- 프로젝트 규모 (US\$ 백만) : 5.3

※ 연해주는 주정부측의 자료 미제공으로 작성치 못함

러시아 내 공장설립시 유의사항

WEST GROUP STROY Ltd.

이 지 육

1. 입지 선정상 유의할 점

가. 물류의 편의성

- 소비도시(내수)/수출항구(수출)의 인접 여부
- 육로, 철로의 인접 여부
- 교통체증 정도, 모스크바의 경우 동·북·서북쪽은 적체, 서남·남은 비교적 원활
- 일반 버스의 운행 여부

나. Utility 인입비용

- 러시아의 경우 공장설립자는 스스로 전기, 가스, 전화, 상수, 하수관을 끌어와야 하는데 Connection Point 는 당국의 결정에 따름. 생각 밖으로 먼 곳에서 끌어와야 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땅값이 쌀 경우 대부분 Utility 인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다. 인력 수급

- 기술인력, 기능인력, 보조공의 수급 용이성 여부
- 인건비 격차 : 수도권과 지방은 2,3배의 임금 격차가 남

라. 관할 행정관청의 자세

- 지방 정부간에 서류처리의 신속, 뇌물관행, 적극적 지원 여부가 천차만별
- 대체로 극동 쪽으로 갈수록 낙후

마. 소유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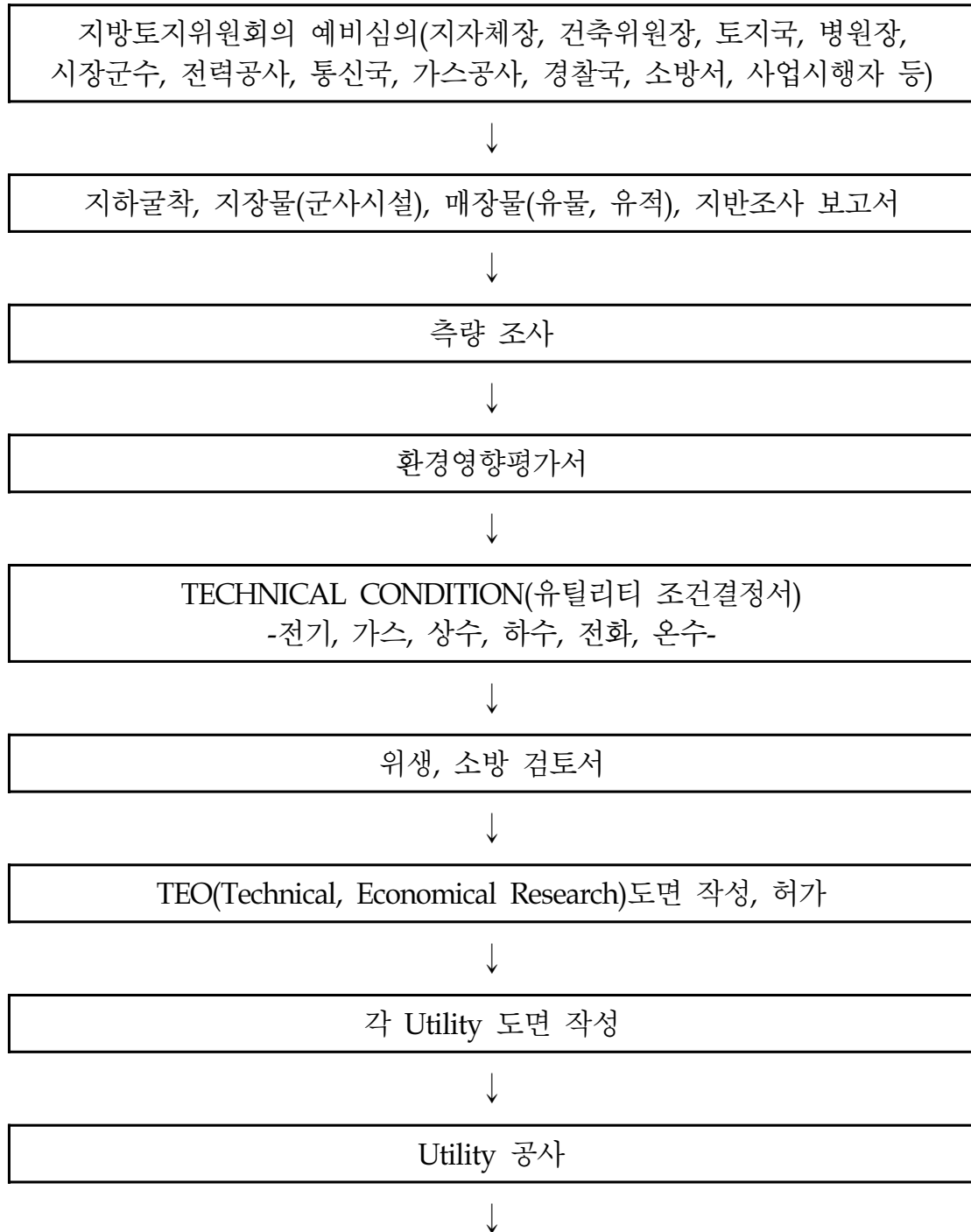
- 공장용지,건물의 경우 과거 집단농장 소속원(SOVHOZ)들의 공동소유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기존 건물의 경우 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브로커인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 단독 소유를 찾는 것이 무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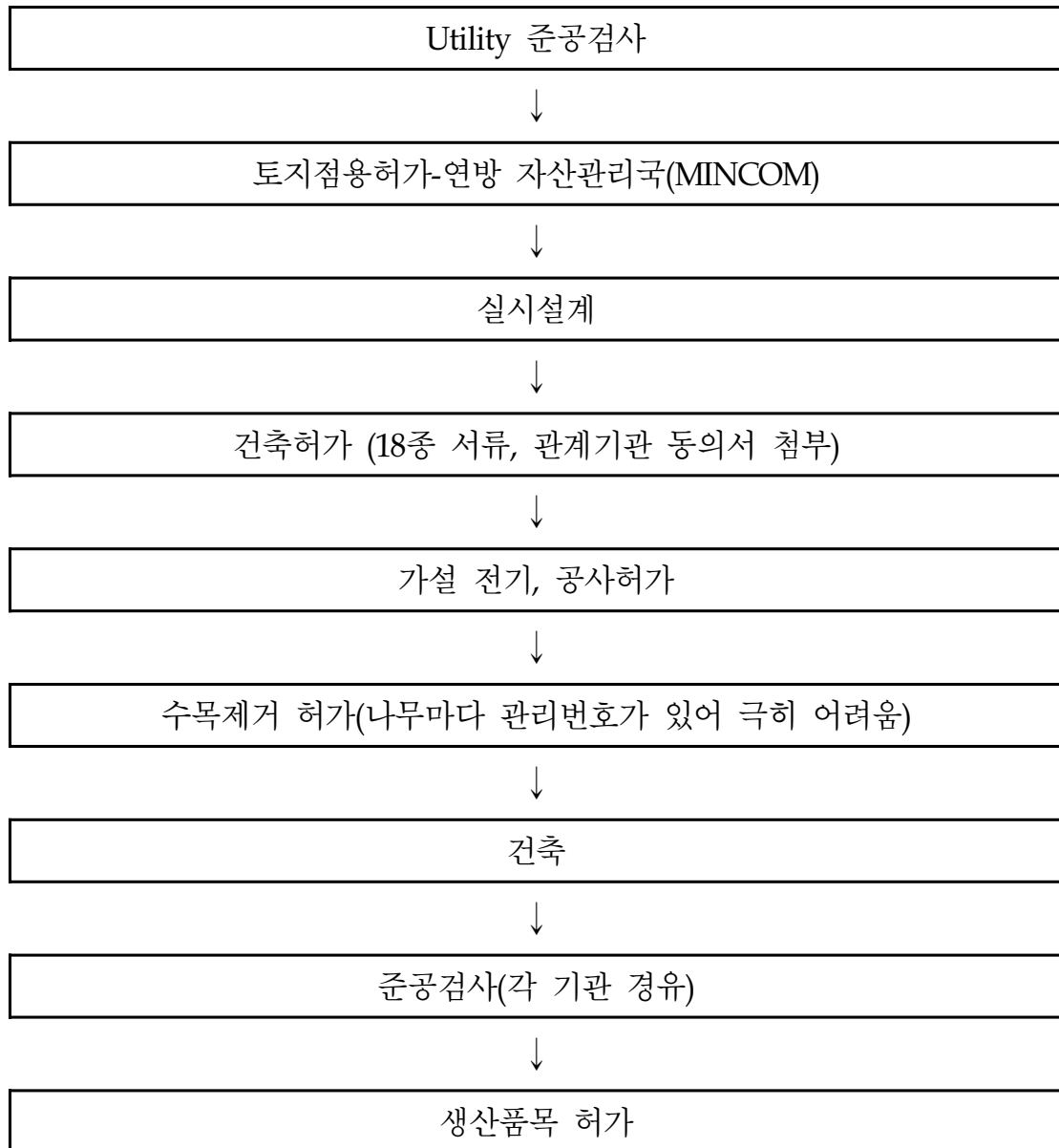
바. 인허가 문제

- 제도상으로는 완전 자본주의이나 행정내부 법령,조례는 공산주의 때의 규제가 남아있어 인허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이것을 생략할 수는 없음.
- 착수시점에서 가동시기까지 넉넉한 시간을 잡아야 함.

2. 공장설립의 일반적 절차

가. 나대지에 세우는 경우





나. 기존 건물을 임대, 인수하여 공장으로 쓰는 경우

- 우선 기 허가 사항을 살펴야 함
- 공장허가는 대물허가가 아닌 대인허가로 간주함으로 동일품목, 동일 CAPA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간단축에 별 도움이 안됨.

러시아 물류 운송 절차

동해해운(주)

서갑식 부장

본인은 현대상선에서 근무하던 중 1991년도 동해해운 이라는 국내 제1호
구소련(공산권) 투자 법인을 창설한 후 동해 해운에 진출 근무 중 1996년 3
월 현대상선 블라디보스톡 지사에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2000년 10월 현대상선 모스크바 지사를 추가 설립
2003년 6월 까지 모스크바 지사장으로 근무한 후
2003년 6월 2일자 현대상선 본사 귀임하여 동해해운에 발령 받아
현재 동해해운의 컨테이너 운송 업무 및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격동기에 한·러 교역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의 4년
과 모스크바에서의 4년 세월에서 그들의 자본주의로의 새로운 변화 과정을 보
고 느낀 운송 업무로 파견된 주재원으로서의 느낌을 여러 분들께 바로 전달하
기만 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고

보드카 40도는 술다운 술이 아니고

길 거리 400 킬로미터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형편에서의 어
려운 처지 였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우리들 보다 더 순진하고 정직한 영혼
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길들여진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 동물적 근본
으로 단련된 저에겐 많은 교훈을 얻게한 곳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운송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외교선언문 발표로 공산권에 문호 개방 가능성이
선포되었고 1983년 9월 1일 KAL기 격추 사건이am로 소련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감정이 국민 모두에게 서게 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소련 외무부 영사단 일행의 입국 및 외교
문 교환으로 한·소간의 새로운 시작에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1989년 4월 3일 소연방 상공 회의소 서울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90년 9월 30

일 이루어진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교류는 공식적 본격 궤도에 이르게 됩니다

한·러 간의 운송 개시는 1980년도 말 노태우 정권이 완성한 구 소련과의 공식화 외교 관계 수립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고르바초프 집권의 구 소련에 30억불 차관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 차관의 일부는 현물로 지급 되게 됩니다

현물 차관의 지급 결정으로 한·소 양국간은 당장 차관 물자의 수송을 감당 해야 될 정기선 운영이 협의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도 당시 일본 ~ 러시아 간에 구 소련측의 FESCO 선사와 일본측의 NAVIX LINE 과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일본 ~ 구소련간의 정기선 운영체제와 같은 한국/구소련간의 정기선 운영이 논의/합의 되게 되어

199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 측은 현대상선이 지명되고 구 소련측 FESCO가 지명이 되어 한·소 양국간의 정기선을 운영하는 주체로 합의되어 집니다

제가 현재 소속되어 근무 중인 회사는 양 국가간에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기선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 3억원으로 현대상선측이 51%, 구소련측49%를 투자한 설립한 동해해운이란 양국 선주를 대리 할 수 있는 대리점 회사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양 회사를 대리한 동해해운은 1991년 7월 6일 현대측에서 제공한 컨테이너 전용선339 TEU와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302 TEU선박을 투입하여 부산 ~ 보스토치니 간을 주 2회 정요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정기선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개시 당초 투입 된 총 선복은 WNEKD 641 TEU 수준이었지만 동 선복은 1991년 이후 다음 같이 물량 증가의 변화에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국발~러시아 향 / 러시아발~한국향 (단위 : TEU)

1991년도	16,798 /년(700/주)/	9,809/년(409/주)	항로 개시년도 7~12월 6월간
1992년도	21,555 /년(449/주)/	8,214/년(171/주)	
1993년도	23,784 /년(496/주)/	14,174/년(295/주)	
1994년도	24,496 /년(510/주)/	17,824/년(371/주)	
1995년도	30,205 /년(629/주)/	20,062/년(418/주)	
1996년도	37,458 /년(780/주)/	23,618/년(492/주)	
1997년도	38,243 /년(797/주)/	19,819/년(413/주)	
1998년도	35,580 /년(741/주)/	16,886/년(352/주)	
1999년도	29,706 /년(741/주)/	14,574/년(304/주)	
2000년도	46,265 /년(964/주)/	22,258/년(464/주)	
2001년도	57,756 /년(1,203/주)/	25,071/년(522/주)	
2002년도	69,060 /년(1,439/주)/	33,332/년(694/주)	
2003년도	97,916 /년(2,040/주)/	42,068/년(876/주)	

1991년도 개시 당초 한국 발 러시아 향 수출 화물이 주당 700 TEU로 시작되어 1998년도 러시아의 모나토리움을 겪으며 물량이 감소되다가 2003년도 연간 예상 수출 물량이 주당 2,040 TEU 운송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수입 물량을 합하여 비교하면 개시 당초 1992년도 물량이 주당 620 TEU(449/171)에서 2003년 현재 주당 2,916(2040/876)TEU로 470%의 물동량 증가의 성장율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당사가(KSDL) 제공하는 주당 선복은 1,840 TEU 이며
 마산(수)~부산(수, 목)~보스토치니(금, 토)의 M/VG.TSADASA 640 TEU
 부산(금)~보스토치니(일)~블라디보스톡(수)의 M/VS. EXPRESS 1,170 TEU

이외에 2001년도 9월 서비스를 개시한 주 1회 SCF(러시아 선사) 제공 500 TEU

2001년 11월 서비스 개시한 주 2회 MCL(러시아 선사)의 1,000 TEU

2002년 3월 서비스 개시한 동남아해운(국적선사)의 주 2회 360 TEU

주당 총 7척의 선박이 부산 ~ 보스토치니 간의 정기선 서비스에 임하고 있으며 총 제공 가능한 선박은 3,700 TEU의 선박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박의 소속율은 금년도 주당 예상 물량 2,040 TEU 대비 3,700 TEU로서 총 55%의 선박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한국 발 러시아 향 수출 화물의 품목을 구분하여 보면

전자제품(삼성, 엘지, 대우)	: 43%
PET CHIP RESIN(석유화학제품)	: 18%
섬유/의류제품	: 5%
식품류	: 6%
자동차 부품류	: 1%
기타 물건	: 28%

비중으로 컨테이너 화물로 포장이 되어 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자료는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물건들의 수치이며 그 이외에 NON CONTAINER로 일반 화물선 또는 부산 기항하는 소형 잠선박들에 선적 의뢰되어 블라디보스톡 또는 보스토치니에 반입 되는 물량이 월간 약 50,000 CBM으로 40' 개당 80 CBM으로 환산 하면 월간 625 FEU이며 이는 주당 160 FEU(320 TEU)물량이 추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재 한·러 간에 형성된 해상운임은 최근 추가된 후발 3개 선박회사의 시장 진입 방안으로 대 화주 운임 덤핑이 지속되어 결국 4개의 운항 선사들은 본선 투입 고정비를 보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서 있는 수준의 해상 운임입니다

결국 러시아 시장 진입을 AIM 하시는 수출업자들의 운송료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는 현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 업자와 러시아 수입 업자간의 무역 거래 조건은 과거 수출업자가 운송을 주도하던 CIF 또는 C&F 상태에서 현재는 EX-WORK, DDU, DDP 등 여러가지 무역 거래 조건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가전제품의 예를 들면 완제품의 경우 국내 수출업자들은 러시아 구매자를 겨냥한 모든 상품을 러시아 국경 인접 국가인 핀랜

드에 운송하여 핀란드내 자유무역지역의 안전이 보증된 국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후

모스크바내에 판매업자의 SALES NET WORK을 이용하여 러시아 내 가전품 딜러들에게 핀란드 창고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품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품의 통관 시스템과 관련입니다
왜 러시아에 직접 수입 통관되어 러시아의 소비자 손에 들어가야 될 한국발 러시아향 수출품들이 러시아를 지난 후 제 3국으로 반입되어 제3국의 창고 안에 보관되다가 러시아 구매자의 손으로 러시아 내에 반입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러시아의 정체성을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국토 면적은 1,708만 평방킬로미터로서 남한의 10만 평방킬로 대비 171배의 국토 적으로 전 세계 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억4천 3백만 명이며 인구는 감소추세 입니다

국민 총 생산은 2000년 현재 1,660 달러로서 러시아의 부는 소수 특권층에 몰려 있는 자본주의를 시작하는 나라의 많은 문제점들을 시장과 정치집단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 정치, 경제 환경하에 형성된 운송 및 운송에 관련된 통관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발 러시아 향 화물 운송은 크게 러시아의 우랄 산맥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랄 동편지역 화물 운송

우랄 동편은 컨테이너 화물 기준 러시아 극동의 부동항인 보스토치니 항과 블라디보스톡 항을 hub-point로하여 운송이 이어지며 한국 ~ 연해주까지는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보스토치니 및 블라디보스톡 이후의 운송 구간은 TSR 철도 운송으로 연결됩니다

화물은 두가지 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블라디보스톡 또는 보스토치니 도착 후 철도에 환적 되기 전 수화주 대리인에 의해서 수입 통관 후 러시아 내국 화물이 되어 운송하는 방법과

둘째, 환적항 도착 후 보세 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 도착하여 수입 통관을 실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 집니다

통관 장소의 선택은 수화주의 해당 세관원들과의 관계 및 절세 효과 가능성을 고려 결정 하게되며 그 결정은 수화주의 몫이 됩니다

철도 운송료는 화물의 철도 환적전 수입 통관 여·부에 따라 철도 운송료에 부가가치세 20%가 추가 또는 제외됩니다

수입 통관이 된 화물은 20%의 부가세가 면제되며 최종 목적지 도착후 통관이 예정된 보세 운송 화물은 20%의 부가세를 더하여 철도 운송료가 계산됩니다

우랄 동편 이지만 보스토치니나 블라디보스톡에 가까운 인근 지역 하바로프스크(블라디에서 900km) 지역의 운송은 주로 해상운송 종료후 내륙운송은 truck 운송으로 이뤄지며 국내 운송 주선업체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인근의 트럭에 의한 내륙운송은 FULL CNTR를 목적지 인도후 같은 트럭이 화물의 SRTIPPING을 기다린후 공 컨테이너를 회수하여 가지고 돌아오는 운송형태가 주종을 이룹니다

우랄 서편지역 화물 운송

모스크바 종착지 기준 화물의 운송 모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부산 CY ~ 보스토치니(선박: 530 mile, 1,074 km) ~ 모스크바(철도: 9,336 KM)(러시아 직교역 화물로 모스크바에 직접 반입: 40일)

둘째,

부산 CY ~ 함브르그 독일(선박) ~ 하미나 핀란드(선박) ~ 모스크바(트럭)
(부산 ~ 하미나 까지 : 19,800 km/ 45 일)

셋째,

부산 CY ~ 보스토치니(선박) ~ 하미나 또는 코발라(철도 : 12,200 km)

부산- 보스토치니 : 1.5일

보스토치니 통관 : 1.5일

보스토치니 wagon 대기 : 7일

보스토치니/하미나 by Block Train : 15 days

총 25일 소요되어 종착지인 하미나에 도착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판매되는 화물이 모스크바를 경유(1,800 km) 핀란드 창고로 들어간 이후 다시 모스크바로 되돌아오는 운송 모드의 관찰은 러시아 세관 행정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백색 가전을 수출하는 S, L, D 회사는 1991년 이후 한국 발 경험 물자와 함께 대 러시아 가전품 시장에 진입을 시작하여 현재는 러시아 가전품 소비 시장의 70% 를 한국산 가전품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스크바에 하루를 머무시면 길거리의 입간판만 보게 되면 서울보다 더 많은 한국산 TV, 냉장고, 오디오, 세탁기 선전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과거 SONY, 필립스가 장악하였던 시장을 SLD가전 삼사가 완전 정복 한 것입니다

왜 그 물건들이 핀란드 창고에서 러시아 DEALER 들에게 팔리게 되었는가 ?

한국 어느 회사도 러시아 내 세금의 근본이 될 물건 판매 자료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국내 업체들은 핀란드의 자유 무역지대에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에 물건을 저장한 후 러시아 구매자에게 창고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하며 러시아 구매자의 정체는 러시아 정부 당국/세무당국과 연결이 된 초대형 경제 집단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러시아내 판매 가능한 수준의 수입 관세를 핀란드/러시아 국경(VANNIKKALA/BUSLOVSKAYA)통과시 협상세금을 납부 후 러시아내 수입 통관을 실행하며 수입관세의 적용 세율은 오랫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현재는 대표되는 품목을 정하여 트럭 UNIT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 후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1월이 되면 세금관련 도둑들의 협상이 이뤄지고 이 시기에는 잠정적으로 화물 운송이 중단 되게 됩니다

결론은 국내 기업이 러시아에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면서 장사 할 수 있는 터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러시아의 대부분 기업들은 탈세, 절세의 대책이 있지만 외국 기업이 러시아 진출을 꺼리는 이유는 러시아 국적의 현지 기업들과 같이 절세, 탈세가 불가하다는 현실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세금은 받아내며 망한 외국 기업은 결국 건물이라도 러시아 국가의 세무 당국이 접수하게 되는 많은 경우를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적의 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시킨 후 회사를 고의적으로 망하게 한 후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종전의 일을 계속 유지하여도 러시아의 관련 법은 전임 회사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을 그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가난한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과 질서가 아직도 틀을 잡지 못한 국가 현실 속에서 외국 기업들은 유리거울로 울타리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에서 러시아 현지 회사와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 무역 거래의 고려 시 세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필히 구매자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수입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하나 송장 금액 기준

수입관세 : 10 % ~ 20%

부가세 : 20%

기타 세금, 수수료 : 15%

합하여 약 50%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입 관세율은 원료가 최저 관세율이고, 반가공품은 중간 관세율, 완제품은 최고 관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세는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과세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는 납부 당시 경화나 공식 환율에 의한 루블화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 관세는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였고 관세 변경은 공포 후 18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통관 관련 서류로는

세관신고서(소정양식), 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가 필수이며 이외에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별도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도 통관 문제는 러시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통하여 또는 KOTRA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GUIDE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운임 관련 현재 실행되는 운임 수준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선사가 제공하는 COC 기기와 화주가 직접 중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화물을 적입한 SOC 기기 두가지로 구분되며 해상 운임은 COC대비 SOC가 45% 정도 낮은 운임이며 철도 요금은 약 20%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부산 CY ~ 모스크바 철도역 까지의 COC기준 복합 운송료는

20' COC 기준 : USD2,550 + Guard Fee \$216 수준

40' COC 기준 : USD4,800 + Guard Fee \$402 수준입니다

SOC 컨테이너 기준 모스크바 운송료 현황

20' SOC 기준 : USD3,989 + Guard Fee \$216

40' SOC 기준 : USD5,200 + Guard Fee \$402 수준입니다

부산 CY ~ ALMATY KAZAKHSTAN COC 기준 복합 운송료

20' COC 기준 : USD2,600 + USD93

40' COC 기준 : USD3,580 + USD175

부산 CY ~ CHUKURSAY UZBEKISTAN COC기준 복합 운송료

20' COC : USD2,800

40' COC : USD4,700

상기 해상+ TSR + VR 통한 복합운송 대비 EUROPE 대양 서비스

운임율은 CY BUSAN ~ CY HAMINA : USD4,000 수준 임

부산 CY ~ HAMINA FINLAND DOOR(Multi) : 40' HC/ USD3,150

HAMINA WORK ~ MOSCOW DOOR(By Truck) : 40' HC/ USD1,750

으로 형성된 운임율 수준 임을 알려 드리며 향후 운송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제가 소속된 회사에 문의 주시면 성심으로 답변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경청하여 주심 다시 감사 드립니다.

서 갑 식

동해해운(주)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변호사회관 빌딩 7층

전화 : (02)3702-2001, 2051, 2052, 2053

팩스 : (02)734-5925,5926,5927

E-MAIL : vlgss@hmm.co.kr

러시아 인증제도

CTR Far East Co., Ltd.

박 세 진 차장



BZ 03

CTR FAR EAST CO., LTD.

Certification Body Reg. No. POCC KR 0001.11BZ03

11F, Chongryong Bldg. 98-38, Galwol-Dong, Yongsan-Ku, Seoul, Korea

Tel. (82 2) 709-4580, Fax. (82 2) 749-0777

GOST Certification system



Nov 18. 2003

Contents



- Background of GOST
- CTR Far East Co.,Ltd
- GOST certification system
- Other certification system
-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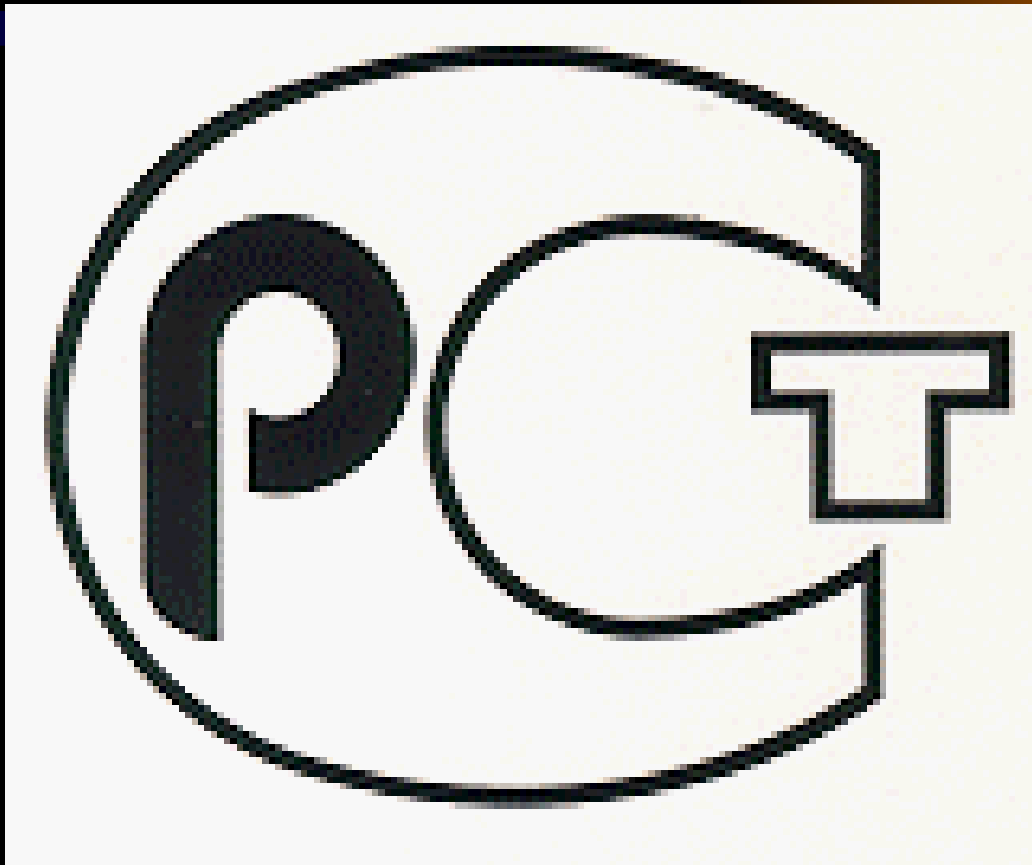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GOST

-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 Russian Federation (Feb.07.1992)
- Supplement 3 on coordinated action (Jan.16.1993)
- The law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Jun 10.1993)
- State customs committee -order 217- on procedure (May.23.1994)

CTR Far East Co., Ltd

- CTR- 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Russian Federation
 - GOSSTANDART " the Russian Authority responsible for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and metrology " has accredited CTR - joint venture CB established SGS & GOSSTANDART (Sep.1.2000)
 - To act on their behalf through out Korea and Far East countries (, , , etc...)
 - CTR is an authorized CB (BZ03) of inspection,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

GOST MARK



GOST Certification system

- The scope of GOST certification
 - (Mandatory certification 80%)
the products concerning health for a nation,
safety. Environment ..
 - (Voluntary certification)
the products not included in Mandatory
scope
 - Declaration for Registration in Russia
- GOST procedure
 - (Shipment or Serial) → /
/ → 가 → GOST

APPLICATION / ЗАЯВКА
for product certification under GOST-R Certification System /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в системе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_____ name of manufacturer, sell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изготовителя, продавца (далее-заявитель)

_____ Legal address / юридический адрес

Tel / Тел : _____ Fax / Факс : _____ E-Mail : _____

In the person of / в лице _____ hereby declares that / просит провести
name of executive, authorized credit manager and CEO of company
/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руководителя

certification of the products (shipment/serial) /
сертификацию продукции (партия/серийный вып) / _____
product name, type, model, code, serial production/batch / наименование продукции, серийный вып. или партия

manufactured by /
выпускаемой (*) _____

in accordance with / по _____
manufacturer's documentation / документация изготовителя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_____
Russian National standards and other documents /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обозначение норм. документов

in accordance with certification scheme /
по схеме _____
certification scheme number / номер схемы сертификации

The applicant agrees to fulfil all necessary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certification /
Заявитель обязуется выполнять все правила и процедуры сертификации

Additional information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ведения : _____

Life cycle / срок службы : _____ years / months (лет / месяцев)

Location of Mark of Conformity / On product /
Место нанесения знака соответствия (**) на продукции

Signature of executive, authorized credit manager or CEO of com
Подпис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Stamp / М.П. : _____

-
- (*) - If the applicant is seller, the name & address of the n
Указывается наименование изготовителя и его ад
(**) - Mark v where appropriate / отметьте, где необходи
-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по

№0203903 *

ОРГАН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Я

код ОК 005 (ОКП):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од ТН ВЭД:

ИЗГОТОВИТЕЛЬ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М.П.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а

Эксперт

СИСТЕМА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по

№ 8016574

ОРГАН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Я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НОРМАТ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ЗГОТОВИТЕЛЬ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органа

М.П.

Эксперт

ИИД ОК 005 (0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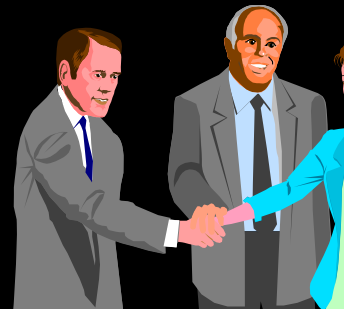
КОД ТН ВЭД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CTR Far East

Tel : 02) 709-4580

E-mail : victor_park@sgs.com



제 2 부

CIS 3개국
시장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시장동향

KOTRA 키예프 무역관장

권 태 진

1. 경제정세

- 우크라이나는 독립전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교육 수준의 인적자원 및 구소련시 주요전략산업(군수산업 등)의 집중배치에 따라 튼튼한 경제력 보유
 - 구소련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전체 산업생산의 20~25%, 군수산업의 30~40% 담당
- 91년 독립후 정치불안정의 지속, 중앙정부의 경제적 통제 와해,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협조 붕괴 및 과중한 에너지수입 부담등에 의해 급격한 산업생산 감소 및 경제파탄 상태 직면
 - 1991년 독립이후 1999년까지 8년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 94.7 Kuchma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 시장경제 개혁 추진 및 정치적 안정 달성에 따라 95년 중반부터 물가, 통화안정, 산업생산 감소 둔화 등 경제적 안정 회복 시작, 2000년도부터는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
 - 시장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서방측 지원도 적극화
 - 경제안정에 따라 96.9 화폐개혁(신화폐 도입) 실시
-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에 따라 경기불안이 가중되었으나, 쿠츠마 대통령의 제2기 집권(1999년)시 개혁성향의 유시첸카를 총리로 임명하여 강력한 통화안정정책 및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1999년이후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의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세에 진입
- 유시첸카 총리의 실각(2001.4)이후 개혁정책 추진은 다소 부진한 편이나, 1999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국내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과 2001년에 두자리수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

- 2000년도에 실질 경제성장률 5.9%, 2001년도에 9.1%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고, 2002년도에는 4.6%의 성장세를 기록 다소 성장 둔화세를 보임
- 2003년 들어 개혁정책 추진 부진, 최대 수출제품인 철강 및 화학제품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
- 향후 경제성장은 지난 2년간 성장세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
- 주재국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국내산업 활성화 등이 최대 과제로 대두

2. 주요경제동향

가. 주요경제 지표 및 전망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1~2월	년간전망	
인구(백만명/년말)	49.7	49.3	48.4	48.0	48.0	48.0	
GDP	(십억Hr)	127.1	173.0	209.2	220.6	30.6	232
	(십억\$)	30.8	31.8	38.9	41.4	5.7	43.8
실질GDP성장율%	-0.2	5.9	9.1	4.6	7.2	5.9	
인플레이션(%)	19.2	25.8	6.1	0.6	0.7(1~4월)	1.2	
실업률(%)	4.3	4.2	3.7	2.6	4.0	3.5	
산업생산증가율%	4.3	12.5	14.2	7.0	10.8	9.7	
수출(\$백만)	13,189	14,572	16,265	17,928	4,851	18,824	
수입(\$백만)	12,945	13,956	15,775	16,149	4,351	16,956	
FDI(\$백만)	489	603	531	783	N/A	790	
FDI누계(\$백만)	3,282	3,885	4,416	5,339	N/A	5,970	
외환보유고(\$백만)	1,094	1,506	2,955	3,885	N/A	4,358	
대미평균환율(UAH/\$)	4.13	5.44	5.37	5.33	5.33	5.33	

(자료원 :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Ukraine)

나. GDP

- 1991년 독립이후 체재전환과정에서 8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으나, 1999년(-0.4%)을 기점으로하여 2000년도에 독립이후 처음 플러스 성장(5.9%) 달성하였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지속
- 2001년도 실질 GDP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389억불을 기록하였고, 2002년도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414억불을 기록하였음.
 - 최근 2~3년간 실질 GDP가 증가한 것은 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2000년~2001년 산업생산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02년도는 다소 부진하여 7%를 기록하였음.
- 2003년 들어 실질 GDP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주재국 개혁정책의 부진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입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다. 고용

-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실업율(국가고용청 등록기준)은 2001년도 3.7%, 2002년도 2.6%로 매우 안정적이며, 2003년도에는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실업율은 10%-20%로 추정
- 최근 2~3년간 경제성장에 따라 근로자 평균임금도 큰 폭으로 상승
 - 2001년말 기준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27.7% 상승한 378.4 UAH(\$71.4)였으며, 2002년말 기준 평균임금은 전년도말 대비 0.5% 하락한 376.4 UAH(\$70.6)를 기록

라. 물가

- 독립이후 체재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며, 주재국의 통화가 발행된 1996년 이후에도 매년 20%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 1999년도 19.2%, 2000년도 25.8%로 소비자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통화안정정책에 따라 2001년도에는 6.1%로 독립이후 최초의 한자리수 물가상승율을 기록, 2002년도에는 0.6%의 디플레이션을 기록, 안정추세
- 물가안정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채택한 강력한 환율안정정책의 결과

마. 환율

- 1996년 신화페(UAH) 도입이후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환율은 급격히 상승, 1998년 달러당 2.45UAH에서 1999년도에는 달러당 4.13UAH로 68.5%가 상승하였고, 2000년에도 32%가 상승
- 그러나, 2000년부터 추진한 환율안정정책으로 현지화의 대미달러당 환율은 점차 안정세에 돌입, 2001년도에는 1%하락하여 평가절상 추세
- 2003년 들어서도 전년 수준이 달러당 5.33UAH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 현지화의 안정은 대외무역수지의 흑자기조 유지,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IMF 등으로부터의 차관재개 등으로 달러화 유입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외환정책 추진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3. 한-우 교역 동향

- 1992년 한-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수립이후 1995년도부터 양국간 교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총교역 규모 36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1998년도의 러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우크라이나 경제위기 여파로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양국교역이 줄어든 바 있다.
-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에 우리나라의 철강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역량도 증가하여 2002년도 양국간 교역은 45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3년 8월말 현재 양국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42.0% 증가한 384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1998년 주재국 경제위기와 대우자동차사태 영향에 따른 자동차 수출의 급감으로 1999년에 1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든 바 있으나, 2000년도부터 식물, 가전,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호전되면서 수출품목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들어서도 8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62.9% 증가한 220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입은 1996년이후 2000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가격에 비해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철강제품, 곡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1999년과 2000년에 우리나라는 극심한 역조현상을 나타내었으나, 2001년부터는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에 따라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2년 들어서는 양국간 교역은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한국의 대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3년8월 현재3건 6.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대우크라이나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8월
교역규모	214.4	301.1	366.0	310.4	465.0	368.3	450.6 (22.3%)	384.3 (42.0%)
수 출	104.4	180.3	197.1	91.9	145.0	173.4	220.3 (27.1%)	220.1 (62.9%)
수 입	110.0	120.8	168.9	218.5	320.0	194.9	230.2 (18.1%)	164.2 (21.9%)
무역수지	-5.4	59.5	28.2	-126.6	-175.0	-21.5	-9.9	55.8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 KOTIS)

4. 무역장벽

가. 수입정책상의 장벽

□ 관세장벽

- 우크라이나 관세율 구분의 근거는 수입관세법(Law on the unified import duties)인데, 일부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타 국가중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의해 우대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관세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우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수입관세는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2003년말 WTO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회원국과의 협상과정에 있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세율을 점차 인하조치하고 있다.

주요품목별관세율

품 목 명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컴퓨터	20%	10%
칼라TV/냉장고/세탁기	50%	25%
폴리에스터직물	20%	5%
신발	30%(단,켈레당 최저2유로)	25%
축전지	30유로/개	15유로/개
PET	10%	5%
인조모피	40%	20%
낚시대	40%	20%
안경테/선크라스	20%	10%
사진앨범	10%	5%

(자료원 : 우크라이나관세청)

□ 수입부가금

- 우크라이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세와 소비세, 세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는 수입통관가격의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CIS국가 제품(일부 제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관련법령에 정한 경우, 일부 자유경제지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담배, 알콜, 중대형 자동차 등 일부사치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300%까지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소비세 산정은 '상품가격+수입관세+통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통관절차상의 장벽

-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시 즉시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간이검사후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는데, 수입신고 및 심사,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후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통관절차는 종결되

는데, 우크라이나의 통관관련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고, 관련규정이 수시로 변경되어 실무 세관원들의 자의적인 집행사례가 빈번한 편이며, 관료주의와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사소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뇌물제공 등으로 편법 통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법 통관은 비단 세관원의 부패 때문만은 아닌데, 수입업체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수입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실제가격의 30-50%수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함(언더밸류)으로서 세관원으로 하여금 부패를 조장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위기시기나 선거철 등에는 세관원들의 의도적인 통관지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품에는 표기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포장에는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다. 수입통관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우리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 수입규제

- 우크라이나는 각종 법률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쿼터제 또는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등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육류 등 식품류의 경우에는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사례로는 러시아산 베킹소다, 스페인산 등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러시아산 시멘트, 철로개폐기, 키르기즈스탄산 전구, 벨라루스산 섬유관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산 소고기와 프랑스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현지합작생산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5년 이상 중고차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고, 2001년 3월에 8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서방측으로부터 폐지를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 쿼터, 관세, 수입금지품목 이외에 살충제, 제초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의료용품, 화장품, 수의용품, 레코드판 제조용 매트리스, 오존파괴물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라이센스를 받아야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 임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국내 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가공후 완제품을 수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봉제산업과 화학산업 등이 좋은 예이나, 실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수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우크라이나는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생산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무역위원회가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피해여부를 판정후 피해 판정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덤핑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서류심사 등으로만 예비적으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반덤핑으로 제소하기 위하여는 해당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이 없는 업체의 제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해당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경우 반덤핑 제소나 기타 수입규제를 당한 사례는 없다.

□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 우크라이나는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에 의거 일부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식품, 자

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기타 기계-전기로 작동하는 공산품 등 200여가지에 달한다. 이들 품질인증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하기전 사전에 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ISO 등 국제인증이나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인증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품질인증제도는 가장 큰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서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품목별로 120여개 기관이 있으며, 이들 정부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유효한데, 품질인증서에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것(단수용)과 1~3년간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복수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단수용 인증서는 한 상품에 대한 인증서, 1회 선적분에 대한 인증서로 나누어지며, 복수용 인증서는 1년, 2년, 3년짜리가 있다. 따라서 품질 인증서는 총 5종이 있으며, 종류별로 획득절차, 구비서류, 소요기한, 비용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 단수용 품질인증서는 소정의 신청서, 샘플 및 제품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복수용 품질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검사원의 공장방문 검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검사원의 출장비용(항공임,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 의약품의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절차가 다른 상품에 비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소요기간도 길다. 통상 1개의 의약품을 등록하는데는 평균 6개월에 1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 식품류의 경우에는 1997년1월1일부터 원산지, 제조업체, 무게, 성분, 칼로리, 보관조건, 유효기간 등이 우크라이나로 명기된 라벨을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제품의 경우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수입토록 하고 있다.
- 2003.9.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광고 등은 우크라이나어로 표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외국 회사 로고조차도 우크라이나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외국회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기간서비스 등은 많은 부문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인데, 철강산업 등 국가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에서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타겟이 되고 있다.
- 또한, 장기간 공공요금이 체납된 경우나, 법인세 등 세금체납, 근로자 연금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특별 탕감조치를 취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유는 정부의 해당산업 보호정책도 중요하나 정치권력과 연계된 산업인들의 로비활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철강산업의 경우 법인 수익세를 2000년 7월에 30%에서 9%로 인하조치하였고, 2001년부터는 다시 인상하였으나 15%로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수익세 감면조치는 미국, EU 등으로부터 보조금 상계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부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은 입찰기관이 없으며, 물품을 구매하는 각 정부기관이 실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관련 정보는 경제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예산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구매-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토록 규정화 되어있으며, 정부조달물자의 구매계획이 내각을 통과하면, 각 정부부처는 이에 의거하여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은 마감일 45일전에 공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단축할 수 있다.
-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입찰참가는 원거리와 언어상의 문제, 현지 담당자 접촉 등의 문제 등으로 참여자체가 쉽

지 않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나, 인터넷으로 공고하지도 않을뿐더러 입찰서류를 구비하더라도 우크라이나어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보이지 않은 장벽이 많이 있다.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나, 내각에서 조달입찰시 국제입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국산 산업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제한하게 된다.

- 정부조달시장의 경우에는 주재국 예산에서 실시하는 입찰보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자금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조달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입찰대행기관이 서방업체일 경우에는 구매입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최종시한이 공표되고 입찰조건이 명확하여 한국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지적소유권 보호

- 우크라이나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특허권의 경우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상표권은 이에 비해 장기간(3년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저작권은 1개월 소요되며 비용도 저렴하다.
-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상표법에서는 보호기간을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상표권은 10년간 갱신할 수 있고, 재갱신하여 영구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의 등록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등록비용도 적은 편인데 비해 비거주자의 경우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만 등록해야 하며 기본 등록비로 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이다.
- 우크라이나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의 국제재산권보호협약을 체결하였고, 1970년 특허협력협약, 1967년 상표권보호에 관한 마드리드협

약, 1967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95%는 불법 복제품이며, 이로 인해 USTR에서는 최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2002년1월3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령으로 레이저 컴팩디스크 생산, 수출입, 유통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나. 투자장벽

□ 투자진출 제한분야

- 외국인 투자는 1996년 3월에 제정된 "Law on the Regime of Foreign Investment"에 그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법 상에는 외국인 투자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몇 개의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보험업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제한이 해제되었다.
-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고, 내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 100천 유로, 외국합작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500천 유로의 자본금을 납입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소유는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법(Law of Ukraine "On Insurance")개정(2001.10.4)을 통해 2001년11월7일부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 철폐되었다.
- TV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 투자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 투자절차상의 제한

-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우크라이나 투자진출 형태는 100%외국인 소유 현지법인, 합작법인(Joint-Venture),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설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3가지 형태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 및 제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들 법규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지방 정부마다 시행령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을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 외국인이 단독투자나 합작투자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 등기국에 투자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주정부 통계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신고를 하고,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인감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 종업원들의 고용계획을 세운 후 국가고용기금, 국가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설립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모든 서류를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설립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법인 설립이나, 지사-사무소 설치의 경우 절차상의 복잡성과 다수의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편이나, 법적으로 설치상의 제약요인은 없다. 다만, 외국기관이나 지사 등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지방정부 산하의 GDIP(General Directorate on foreign Representative)라는 기관을 통해서 고용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현지화로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이 외에 국가연금기금(급여의 32%), 체르노빌기금(10%), 사회보장기금(5.5%) 등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지사-사무소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현지화 환율의 불안하고, GDIP에서 지정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2003.9월 현재까지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2001년도 토지법 개정으로 내국인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개인에게 토지소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01년도 토지법에서 향후 5년간 토지구입 및 판매활동을 금지하고, 2005년 이후부터 토지매매를 가능토록 하였고, 2005년~2010년간 개인당 토지소유한도를 100헥타르 이내로 제한하였다.
- 2005년 이후에 외국인도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소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최장 49년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유자산 민영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공표해 놓고 있다.
- 2004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외국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공표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금융상의 제한

- 우크라이나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통제가 심한 편이다. '98년 8월말 외환위기가 발생되자 중앙은행은 '98년 9월부터 수입대금의 20%한도내에서만 선불로 송금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는데, 이 조치는 10개월 후인 '99년 7월에 해제되었다. 2001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의 은행간 외환 송금행위를 금지시켜 외국기업들이 달러화 결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현재 중앙은행 규정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외국인투자 현지법인 포함)의 경우 외환수입의 50%는 의무적으로 현지화를 매입해야 하며, 외환을 사용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선하증권 발급일자로부터 90일 이내 수입물품을 우크라이나에 도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과실송금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소득을 입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과실을 송금하는데 제한이 없다.
- 한편, 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타스크포스(FATF)에서는 2001년8월에 우크라이나를 돈세탁 위험국가로 분류하여 각종 금융제제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중앙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국을 신설하여 금융감시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5만 유로 상당 이상의 금융행위는 은행에서 반드시 국제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 주재국의 환율은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식환율을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 최근 2~3년간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2000년 2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환 공식환율은 외국환 거래소와 실제 거래환율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고시하고 있으며, 이중 환율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 세재상의 제한

-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 양국 의회 비준을 마쳐 2002년 3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었다.
- 주재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 없이 소비자들의 제소만으로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나 정국 불안시기에 잦은 세무사찰로 외국기업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기타 장벽

- 한-우크라이나간 기업인 복수사증 협정이 2001년10월16일 체결되어 2001년11월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상용비자 취득여건은 많이 개선되었다. 동 협정에 의하면, 일반기업인에게는 1년 유효 최장 3개월 복수사증을, 상사주재원 및 가족에게는 3년 유효 최장 2년 복수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한지 오래되지 않아 케이스별로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우크라이나는 91년도 독립이후 체재전환기 과도 경제상황으로 조세, 금융, 투자보호 등 인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잦은 법령 개정과 법령 간의 상호 모순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사례가 빈번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장래 예측가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 서방이나 외국기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폐나 모호한 법률 체재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환경, 부패, 높은 세금부담, 정부와 민영화추진기관간의 협상의 어려움, 정치환경의 불안정, 인프라 부족 등을 들고 있다.
- 실제,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의 활동상의 문제로서 잦은 세무조사, 관료주의 및 부패 만연, 주재국 파트너의 독점 전횡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5.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전략

가. 우크라이나 시장 특성

1) 소비재산업 취약, 경공업제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 중공업, 군수산업 및 농업위주의 산업구조에 기인하여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공업제품을 수입에 의존

2) 러시아와의 높은 교역 의존도

- '91년도에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러시아와는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음(전체교역의 약 35%정도)
- 러시아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 교역

3) 이원화된 소비구조

- 중산층 미형성으로 소비계층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양분되어 있어 소비시장도 고급품시장과 저급품 시장으로 이원화
- 95%이상의 국민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중국, 폴란드, 터키산 저가품의 진출이 활발함

4) 진입이 까다로운 시장

- 까다로운 품질·규격 인증제도 실시 (비관세 장벽)
- 독특한 비즈니스관행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시장진출 장애

5) 서구취향의 소비 행태

- 소비자들이 서구적 생활양식에 익숙해 있어 독일, 미국, 이태리, 프랑스 등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일본, 중국 등은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진

나. 우크라이나 시장진출시 유의사항

1) 상거래관행 및 바이어의 관행 이해

- L/C거래 기피, D/A거래 일반화 등 상거래 관행 이해

- 인콰이어리 회신을 잘 하지 않는 바이어의 관행을 이해
- 특히, 통신시설낙후와 언어장벽에 따른 교신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함

2) 품질인증제도 적용여부 확인

- CIS국가의 독특한 비관세장벽인 품질규격인증제도 적용여부 사전확인
- 바이어 상담시 인증절차 및 비용에 관해 합의 필요

3) 바이어 결제능력 확인

- 처음부터 D/A거래는 피하고, 소액 현금거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분할 또는 외상 거래시에도 바이어 신용도 확인후 신중히 추진

4) 계약서류나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

- 계약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하며(날짜, 유효기간, 오탈자, 서명, 직인등), 언더밸류 요구시에도 향후 대비 근거서류 확보
- 계약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 필요

5) 비즈니스 에티켓 준수

-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 농담조로 이야기 하지 말 것
-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가르치거나 얽잡아 보는 인상을 주지 말 것(우크라이나는 후진국이나 실제 산업화된 국가(우주항공산업 발달)로서 자부심이 대단함)
- 상담시 사전약속 필요(예고없는 방문은 실례)

- 회사를 방문시에는 안내자가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므로 여성 차별대우는 금물
- 바이어 방문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면 좋음(꽃, 보드카, 와인, 꼬냑, 넥타이, 스카프 등이 무난)
- 꽃을 선물할 때에는 홀수 송이로 할 것(짝수 송이는 죽은 사람에게)
- 상담시 보수적인 색상(디자인)의 정장이 무난하며, 상담시 자켓을 벗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것
- 명함은 한쪽 면에 영문, 한쪽 면에는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로 준비

다. 우크라이나 시장진출 유망분야

- 인조 가죽 및 섬유직물
 - 한국산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우위 품목으로 인지도가 양호한 편이며, 우크라이나 봉제업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
- 폴리에스테르 수지(HS 3907)
 - 음료 및 주류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
 - 한국산 제품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시장 점유율 1위
- 컴퓨터 주변기기(HS 8473)
 - 정보통신 산업 급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 모니터, HDD등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호조세 유지

-
- 에어컨(HS 8415)
 - 신규 고급아파트 신축 및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수요증가 추세
 - 가정용 진공청소기(HS 850910)
 - 한국산 제품의 꾸준한 수출 증가세
 - 디자인 및 신모델 개발 등을 통한 수출전략 마련 필요
 - TV음극선관(HS 8540)
 - 한국산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
 - TV 생산붐으로 TV 부품 수요증가
 - 핸드폰 및 악세사리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향후 핸드폰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 비디오 폰(HS 851719)
 - 치안악화 및 신규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점증하는 추세임(CCTV 등 보안 장비)
 - 냉온수기
 - 음용수의 수질이 나빠 수요 증가추세이고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양호함
 - 문구류
 - 한국산 제품의 품질 인지도가 양호
 - 의약품
 - 의약품 수요의 대부분을 외국제품이 차지
 - 시장진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나, 장기적으로 수출확대 유망
-

- 보일러(HS8402,8403)
 - 우크라이나의 건축경기 활성화로 주택에 개인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향이 증가 추세
- 기계설비류
 - 소비재의 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 생산 기계설비류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음

라. 우크라이나 시장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체계 구축,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약 3년간 순이익을 거두고 있음
- 시계회사인 모기업은 유럽형 디자인의 손목시계를 우크라이나에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성공
- 유럽화된 제품으로 진출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2) 실패 사례

-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이해하고 값싸고 디자인이 동양화된 제품을 선보였으나 바이어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실패
- 단기적인 수출전략으로 1회에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조금하계 바이어를 재촉하지만, 인내심이 많은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

카자흐스탄 시장동향

KOTRA 알마티 무역관장

서 기 원

1. 주재국의 경제, 무역동향

가. 경제동향

□ 원유 생산 수출 호조로 연 평균 10%대의 경제성장

- 국제원자재가 상승과 원유,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3.1~7월간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
- 외국인 자본의 지속적 유입으로 원유 생산량은 연 1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부문 수출이 주재국 경제성장을 주도

□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 : 물가, 환율의 안정세 지속

- CIS국중 가장 개방적인 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생산이 GDP의 75%상회(2003.1~7월간 인플레이션 2.3%대)
- 주재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석유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바른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1,631불을 기록하며, CIS 국가중 러시아에 이어 2위(독립초기에는 11위)를 기록

□ 외국인 투자 (FDI) 동향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대중양아 투자액의 80%가 주재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80억불을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약220억불 유치

□ 산업 생산 활기

- 제조업 및 채굴업은 석유, 철강 생산 호조로 2001년 13.5%, 2002년 9.8% 성장하였으며, 특히 채굴산업은 석유, 가스개발 및 금, 우라늄 등 광물자

원 개발로 총수출의 80%이상을 점유

나. 무역동향

□ 2000년 이후 교역량 증가 추세

- 수출은 '98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자원수출이 증가하면서 급증 추세

- 금년 1~7월간 수출은 7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율 시현

□ 주요 교역 품목 및 교역상대국

- 수출은 원유, 가스 및 광물 등 자원분야(61%)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철금속(23%), 식료품(5%), 화학제품(4%), 기계류(2%)순이며, 수입은 자원개발 관련 장비 등 기계류(43%), 화학제품(15%), 광물자원(13%), 금속(11%) 및 식료품(8%) 순임.
- 지역별로는 수출이 종래의 CIS 지역 중심에서, CIS(29.7%), EU(14%), 중국(10.5%)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수입은 여전히 CIS(55.4%)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EU(17%), 독일(8.7%), 미국(7%)순임.

다. 한-카자흐스탄 교역동향

□ 2000년을 기점으로 수출 증가세

- '97년 국내 외환위기와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여파로 '99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1-8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9.8%의 증가세를 기록중

- 2000년들어 주재국의 본격적인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원유수출로 외환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

□ 가정용, 산업용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을 주도

- 우리나라의 여타 CIS 국가 수출과 마찬가지로 가정용 전자제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이 수출을 주도(전체 수출의 60~70% 점유)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제품과 자동차,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가전제품과 유무선 통신기기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다, 공격적인 광고 등 마케팅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 자동차의 경우 현지 딜러망 구축 등 현지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경보기 등 수출도 증가세
- 보안기기, 컴퓨터 주변용품 등 IT 제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수입수요가 크며, 소규모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 플랜트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 향후 최대 유망 수출품목 : 건축자재류/IT 관련 제품

- 주재국의 신수도인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대도시에는 건물신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붐을 이루고 있어 건축자재류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주재국은 최근 수년간 석유 생산, 수출 호조로 인한 연간 50억불 내외의 막대한 석유 판매 외환 수입을 바탕으로 건설, 통신망 현대화, IT 공단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한-카자흐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불, %)

구분	1999	2000	2001	2002	'03.1~8월
총교역	107,963	131,766	164,139	197,780	216,128
수출	56,606 (-45.6)	82,385 (45.5)	108,003 (31.1)	126,110 (16.8)	121,840 (69.8)
수입	51,357 (66.4)	49,381 (-3.8)	56,136 (13.7)	71,670 (27.7)	94,288 (124.8)
수지	+5,249	+33,004	+51,867	+54,440	+27,552

(자료원 : 관세청)

2. 주재국 시장특성

□ CIS 역내 높은 교역 의존도

- CIS 역내국 수입 55.4%, 수출 29.7%('02)로 CIS 국가와의 교역이 여전히 크며, 러시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는 관세동맹 체결로 무관세 통관

□ 제조업 붕괴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 구소련 붕괴이후 제조업의 와해로 농산품과 일부 식품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식품류, 의류, 가구, 건축 자재류의 국내 생산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상품의 일반 소비재 시장 석권

-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상품이 저가와 값싼 운송비를 무기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신장성(우르무치) 등지의 중국상품이 의류, 잡화류 등 일반 저가 소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편법 통관 활용)

□ 유통채널의 미구축

- 대부분의 수입상이 영세하며,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다, 거점도 시간 수입 대상국이 다르며, 전국 연결 판매 유통망이 미구축되어 있음.
- 소량, 다품종 주문, 대금 결제는 L/C보다 T/T를 선호

□ 고가의 물류비용

-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 과도한 운송비 부담으로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음.(러시아,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
- 동서간 거리 3,200km, 남북간 거리 1,600km
 - * 20" 컨테이너 수출시 2,300불, 23일 운송기간 소요
 - * 운송로는 TSR(안정성이 장점), TCR(신속성)노선 이용

□ 편법 통관, 개별 수입상 활동 성행

- 통관제도의 미정비로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통관, 중국,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등과의 개별 수입상(보따리 무역상)의 활동이 성행하고 있어 시장 가격 질서가 왜곡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진출현황 및 문제점

가. 무역분야

□ 경쟁동향

- 의류, 잡화류 등 일반 소비재의 경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저가 중국산이 값싼 운송비와 제대로 통관하지 않은 제품을 개별 수입상을 통해 유통 시킴으로서 경쟁이 불리함.
- 섬유, 직물제품 등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어 오히려 직수출이 저조한 실정이며, 문구류, 건축자재 등 품목의 경우 전통적으로 터어키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로 단기간내 기존 거래선의 변경이 쉽지 않음.
- 고가, 사치품과 화장품, 기계류 등의 경우 유럽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유럽산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 인식도와 제품 신인도 향상이 급선무임.
- 경제 호전,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고가 고품질의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지 수입상들은 특히 한국산 건축자재, IT제품, 보안기기 등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을 추가로 취급하거나 독점 딜러를 요구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동 품목들의 수출 확대가 예상됨.

□ 현지 상관습 및 상담시 유의사항

- 소액 다품종 주문, 퀵 딜리버리를 선호하며, L/C보다는 T/T가 많음, 외상거래 요청도 빈번한 편임.
- 여타지역(국가)보다 조금 비싸게 오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어 구사자가 적으며, 대부분 노어로 의사 소통

- 전문 수입상이 적으며, 유통구조 정립 과도기이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물류, 운송 비용 과다 소요되므로 통관, 운송비 부담에 대한 수출가격을 계산에 넣어야 함.
- 대부분의 품목은 현지 품질 인증(Registration)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바이어와 협의, 인증에 대한 수출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임.
-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임.
- 상담시 제품 카탈로그를 충분히 준비하고, 노어 명함이나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 로고가 찍힌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좋음.
- 현지인들은 정부인사나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인맥과 자금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대부분은 과장된 경우가 많음.

□ 우리기업 진출 현황

- 현지 진출기업으로는 가전3사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중견 수출기업이 전무하며, 운송업체와 소규모 중소기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진출업체가 약 15개가 있음. '97년 한국 경제위기시 진출기업이 많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기업의 현지 진출(회사 설립, 현지 투자)은 활발치 않은 편임.
- 전체수출의 약 60~70%를 전기,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등 수출 품목이 편중화되어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개발이 긴요함.
- 국내에서 출장오는 업체들은 광물 수입, 기계, 플랜트류 수출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현지 교민, 고려인 등에 의존하는 경우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시간과 비용 손실 등 초기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음.

나. 투자분야

□ 주요국 진출 상황

-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따른 쉘부론 텍사코, 엑슨, BP 등 세계 우수 오일 메이저들의 진출이 두드러짐.
- 최근 2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는 80억불로서, '9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20억불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투자국은 미, 영, 이태리, 캐나다 등이고 주요 투자부문은 석유, 가스, 철강 및 비철금속, 식품, 통신사업 등임.
- 우리나라의 투자는 삼성물산의 “제스카스카 구리광산(구리채광 및 제련 : 초기투자 2억불, 현재는 지분만 보유)과 LG전자의 TV생산공장(1,300만불)투자 등임.
 - 기타 소규모 투자로는 봉제업, 요식업 및 유흥업등.

□ 투자진출시 문제점

- 현지 투자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공적인 제조업 투자 진출사례가 없어 투자진출 희망업체가 진출에 소극적임.
- 현지 제조업 투자시 지리적 특성상 판매, 유통을 위한 물류비용이 과도하며,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대규모 제조업 투자시 판매시장 확보가 관건임.(인구 1,500만명, 총면적 한반도의 12배)
- 알마티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시 중앙아시아 5개국(인구 5천만명) 수요를 대상으로 한 투자, 판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북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경우 인근 러시아 시장(시베리아 지역)까지 판매시장이나 수요가 높지 않은 지역임.

□ 유망 투자 진출 분야

- 유망 투자진출 분야로는 통신, 운송, 금속, 화학, 건설, 식품 관광업 등임. 국내업체의 경우 IT나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현지 소규모 제조업 생산 투자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의류 생산 등 봉제업의 경우 현지 인건비가 저렴하고, 대미 수출 등의 경우 쿼타 제한이 없다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운송비가 과도하며, 생산성이 낮고, 노무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우리나라의 대주재국 중장기 진출전략

□ 자원개발, 가공분야 진출

-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스, 비철 금속 등 광물자원의 보고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수입선 확보 차원에서 공동 자원 개발 및 가공업 분야에 대한 지출이 필요함.
 - 국내 원유개발 콘소시엄, 현지 광구개발 참여 준비중
 - 성공사례 : 삼성물산 '제스카스간' 구리광산 성공적 투자
- 자원 개발에 따른 부대 설비 및 관련 기계,플랜트 수출 성공시 엄청난 수출 확대 효과
 - 석유, 가스 관련 기계, 광산 장비, 파이프라인, 통신설비, 건설, 정유공장 설비 공급 등

□ IT/ 건설분야 진출

- 주재국의 IT 분야의 기술 수준이 낮고, 보급,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최근 경제 발전 및 석유 수출 호조로 인한 막대한 외환수입을 바탕으로

통신망 현대화, 주재국내 IT 공단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우수한 IT 기술의 현지 투자, 장비 수출에 주력

- 카자흐스탄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하고, 신수도인 아스타나를 비롯하여 주요도시에 신규 사무실, 아파트, 상가 등 건물 신축뿐 아니라 도로, 교량 등 각종 건설사업 추진이 붐을 이루고 있어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다대함.

- 건축자재 제조업 공장 진출과 현지 건설 시공도 추진

□ 유통분야 진출/ 물류센터 설립

- 대형 유통, 물류센터 설립 및 보세창고 운영

- 알마티(인구 150만명)는 중앙아 최대 금융, 유통, 경제 중심지로 중앙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 유통, 물류기지화에 최적도시

- 백화점, 쇼핑 몰, 전시장, 식당 체인점, 24시간 할인점과 소규모 동대문, 남대문 시장 형태의 도매시장 오픈 등

* 소득 향상으로 소비수요 급증(금년도 국민소득 20% 증가)

5. 상품, 산업별 진출전략

가. 유망품목 및 산업별 진출 전략

□ 건축자재류

- 인프라스트럭처 건설과 건물 노후화, 신수도 건설 등 건물 신개축붐으로 건축자재류 수요 급증

- 중국, 터키, 러시아산 건축자재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 건축자재류의 본격 진출시(현지 제조업 투자 포함)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됨

- 매년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박람회(KAZBUILD)”에 지속적인 확대, 참가가 필요
 - 2003.9.3~9.6일간 한국 건축자재 업체 7개사 참여, 활발한 상담 및 소기의 계약 성과를 거둠. (S 금속 20만불 계약 체결 등)

□ IT 분야

- 알마티 인근에 IT 공단 건설 등 IT산업 발달을 위한 주재국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지 공단 투자 진출등 유무선 통신기기, 솔루션, 인터넷 등 분야의 진출의 적기 도래
 - 최근 CDMA 이동통신 사업 추진중(국내통신업체와 장비업체의 공동 진출 모색 필요)
 - * 2003.10 국내 중소기업 K사, 1천만불 핸드폰(6만대)수출계약

□ 의료장비

- 의료장비 노후화로 개체수요 막대하며, 유료 고급병원 신설 등으로 현대화된 첨단 의료장비 구매 수요 증가
- 지방정부 및 대형병원의 의료장비 입찰정보 입수, 의료장비 납품, 노어 설명서가 구비된 다양한 제품의 의료장비 카탈로그 현지 전시회(제품 설명회) 개최

□ 보안기기

- 빈부격차 심화로 치안 상황 악화, 외국 기업 사무실, 대형 상점, 고급 아파트, 은행, 서비스업의 증가로 보안기기에 대한 수요 급증
- 현지 유망 전문 딜러 발굴, 국내 보안기기업체의 공동 쇼룸 운영 및 소규모 현지 생산 시설 가동

□ 스포츠, 레저용품

- 소득수준 향상, 레저분야에 대한 관심 급증, 광대한 영토 및 산악지형으로 등산, 사냥, 낚시 등 스포츠, 레저에 대한 관심증가로 관련용품의 수요 급증세
- 현지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회 개최 추진, 레저관련 현지 이벤트 행사 개최 추진등

□ 농업분야

- 카자흐스탄은 전통 농업국가로 농산물 재배, 가공 관련 장비 수요가 높음. 현지 농장 운영, 투자(종자, 비료, 농기계 제공 등) 및 화훼 단지 운영(높은 화훼류 수입 의존도) 등 현지 투자, 노후화된 농기계류 교체수요 부응

□ 소규모 제조설비(식품가공 및 포장기계류 위주)

-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낙후된 국내 제조업 생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심화, 제조업 및 유통, 물류업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제조설비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 추세
- 소시지, 제빵설비 등 소규모 식품 가공기계류와 포장기계류에 특화된 국내업체 진출 필요

□ 각종 식품류

- 고려인이 10만명이상 살고 있어 한국산 식품류(음식)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임. 카작인은 한국산 식품류에도 익숙한 편임.
- 라면, 마요네스, 장류, 커피 등 수출과 현지 라면, 김치 생산라인 가동시 신규 수출 수요 창출 가능

나. 유망 수출 상품

- 건축자재류
- IT 관련 제품
- 의료장비
- 보안기기
- 스포츠, 레저용품
- 농기계류
- 식품가공, 포장기계
- 광산장비
- 식품류
- 소형전기제품
- 주방용품
- 자동차부품
- 컴퓨터 주변용품

※ 참고 자료 :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연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7월현재)
G D P	명목 (10억달러)	1,415,750	1,672,142	1,773,264	1,893,478	2,595,965	3,302.6	3,747.2	2,015.3
	(억불)	(210)	(222)	(221)	(169)	(182)	(220)	(245)	(133)
	실질성장율(%)	0.5%	0.5%	-1.9%	2.7%	9.5%	13%	9.5%	10.2%
	GDP per capita	\$1,350	\$1,446	\$1,481	\$1,000	\$1,223	\$1,467	\$1,631	\$1,946(년말예상치)
월평균임금(불)		101.6	113.2	123.7	94.2	94.8	118.5	135.4	146.6
인플레이션(%)		39.9	17.4	7.1	8.3	13.2	6.4	5.9	2.3 5.3(년말예상치)
평균환율 (1불당 달러)		67.3	75.4	78.3	119.5	142.1	150.9	153.4	151.30
무 역	계(백만불)	12,198.4	14,074.8	12,542.1	11,633.3	14,245.6	15,032.6	16,199.6	11,432.6
	수 출	6,291.7	6,899.2	5,870.6	5,988.5	9,193.5	8,668.8	9,709.1	7,107.2
	수 입	6,626.7	7,175.6	6,671.5	5,644.8	5,052.1	6,363.2	6,490.5	4,325.4
	무역수지	-335.0	-276.4	-800.9	343.7	4,087.4	2,305.6	3,218.6	2,781.8
총외채 (백만불) (GDP대비 %)		5,779.2 27.8%	7,726.0 34.9%	9,921.1 45.0%	12,062.8 71.2%	12,327.9 70.8%	15,101.4 68.3%	18,042.4 73.9%	19,877.1(6.30현재) 67.1%
외국인직접투자 (백만불)		1,673.7	2,107.0	1,233.2	1,849.9	2,098.2	3,997.7	4,074	
재정수지 (GDP 대비 %)		-4.2	-3.8	-4.2	-3.5	+0.1	-0.9	+0.03	-0.4(8.30현재)
실업율		4.2	3.8	3.7	3.9	3.7	2.9	2.6	2.4(6.30현재)

우즈베키스탄 시장동향

KOTRA 타쉬켄트 무역관장

박기원

I. 最近 經濟貿易動向

1. 국가개황

- ▶ 국 명 :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 ▶ 위 치 : 중앙아시아
- ▶ 면 적 : 447,400km² (한반도의 약2배)
- ▶ 기 후 : 대륙성(1월 : -3℃ ~ +3℃, 7월 : +26℃ ~ +32℃)
- ▶ 수 도 : 타쉬켄트(Tashkent)
- ▶ 인 구 : 2,400만명('01년)
- ▶ 주요도시 : Tashkent(211만), Samarkant(39만), Bukhara(23만)
Fergana(20만)
- ▶ 민 족 : 우즈베크(71%), 러시아인(9%), 한국인(1%), 기타(19%)
- ▶ 언 어 :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 ▶ 종 교 : 회교(70%), 그리스정교(8%)
- ▶ 건 국 일 : 1991.9.1 (러시아로부터 독립)
-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 국가원수 : Kalimov 대통령 ('91년 당선, 2000.1월 재선)
- ▶ 입 법 부 : 단원제(250석)
- ▶ 정 당 : People's Democratic Party(여당), Homeland Progress,
Adolad (Justice), National Revival
- ▶ 정부성향 : 우경중립, 친서방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1.29
- 주요체결 협정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
협력협정
- 상호 공관 개설
- 한국의 수출 : \$345백만('01), 한국의 수입 : \$136백만('01)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및 투자협력 파트너

2. 경제 개황

항목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십억	13.9	14.7	14.9	17.0	13.5	11.1	9.7	n.a.	
GDP 성장률	%	1.6	2.5	4.4	4.1	3.9	4.5	4.2	3.1	4.0
1인당 GDP	\$	589	618	587	603	418	n.a.	n.a.	n.a.	
인구	백만명	23.4	23.6	24.0	24.2	24.9	25.1	25.3	25.5	
소매물가 상승률	%	64.0	50.0	29.0	29.0	24.9	27.2	24.2	28.0	25.0
실업률	%	2.4	2.0	0.6	1.9	0.4	0.4	0.5	0.5	0.6
재정 수지	%/GDP	-7.0	-4.0	-3.5	-1.8	-1.0	-1.0	-2.0	-3.2	-3.4
수출	\$백만	3,534	3,695	2,888	2,790	2,935	2,755	2,510	2,750	2,780
수입	\$백만	4,240	3,767	2,717	2,587	2,441	2,479	2,187	2,390	2,630
무역수지	\$백만	-706	-72	171	203	494	276	323	360	150
경상수지	\$백만	-980	-634	-67	-177	72	-105	221	-250	-370
외채	\$십억	1.9	2.8	3.2	4.7	4.3	4.6	4.4	4.8	5.0
평균환율 (공식)	sum/\$1	40.2	66.4	94.8	125.0	236.6	424.0	772.0	1,020	1,360
외국인투자	\$백만	90.0	167.0	297.8	240.0	n.a	822.0	950.0	182.0	
외환보유고	\$백만	615.9	373.0	533.0	763.0	600.0	788.0	800.0	n.a.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s, 우즈벡 통계국 등 종합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문제는 민영화의 느린 진전, 사회주의적 제도의 지속, 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부정부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외화수입원인 면화 작황 및 금, 구리 등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에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가격 하락시에는 심각한 외환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1.7.1일 부분적인 환전자유화를 실시하고, 환율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특히 2001.11.1일부로 공식환율을 장외환율과 단일화시킴.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6.16일부로 공식환율과 상업환율(환전소 환율)을 단일화 시켰으며, 암시장환율과의 차이는 10% 수준으로 줄어듬.
- 카리모프 대통령은 IMF 8조국 가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2003.6월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9.11 테러사태로 인하여 발발한 아프칸 사태시 우즈베크 정부는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EBRD, IMF, ADB 등 각종 국제금융기관 및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제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대 수준만큼의 외국자본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최근 경제 동향

- 2003 상반기중 GDP는 3.8% 성장
 - 2002 상반기의 4.2% 대비 성장세 둔화
- 2003 상반기중 산업생산은 5.5% 증가
 - 2002 상반기의 7.2% 대비 증가세 둔화
- 2003 상반기중 인플레이는 4.2%로 안정 (정부 발표)
 - 정부의 가격통제, 통계작성상의 문제, 환율하락 등
 - 수입규제 및 소비재 부족 등으로 연간으로는 20% 수준 전망(EIU)
- 외환자유화 분위기 성숙
 - 암시장과의 환율차이는 5% 이내로 대폭 줄어듬
 - 제한적인 외환자유화 시행 예상 (기업구조조정, 투명성 제고)
- 경상수지 흑자 기록 예상
 - 수입규제로 인한 수입제한
 - 면화, 금 국제시세 상승

- 2003 상반기중 대외무역 증가
 - 수출은 19억3천만불 (전년동기 13억7천만불)
 - 수입은 14억불 (전년동기 13억5천만불)
 - 원면은 전체 수출의 30%, 금은 12% 각각 점유, 환율상승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
 - 非CIS로의 수출이 77% (전년동기 69%) 점유
- 외국투자기업 활동 저조
 - 우즈대우車 상반기중 18825대 생산(15% 감소)
 - BAT 담배생산 3조1600억개피 (8% 감소), 수출 5% 감소
 - 2003 상반기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5천만불 (추정치)

4. 주요 품목 생산 동향

품목명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1-6)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실적	증감율
자동차	천대	59	-8.0	31	-46.8	41	32.3	35.1	-15.1	19.1	-13.9
트랙터	대	1,707	-33.6	954	-44.1						
TV	천대	45	-76.6	28	-37.7						
비디오	천대	7	-86.0	0	0.0	0	0.0				
전력	십억kwh	45	-1.1	47	-3.4	48	2.3	47.9	1.8	25	0.6
시멘트	천톤	3,300	-1.7	3,280	-0.6						
석탄	천톤	2,955	-0.1	2,500	-15.4	2,711	8.4	2735	0.9		
광물성비료	천톤	877	-2.3	832	-5.1						
철강	천톤	356	-1.3	416	17.2	403	-8.3	420	4.1	254	8.5
면화	천톤	3,675	13.6	3,002	-18.3	3,282	9.3				
곡물	천톤	3,600		3,916	8.8	3,820	-2.5				
석유	천톤	7.5		7.3	-2.7	7.3	0.0	7.2	-1.4	1.8	-2.0
가스	십억cbm	55.6		56.4	1.4	57.4	1.8	58.4	1.7	14.5	1.5
면사	천톤	1,018	-10.7	1,019	0.1	1,016	-0.2	1077	-0.9	536	-2.2
면제 의류	백만S/M	307	-1.3	355	15.6	394	11.0	429	9		
담배	백만개	10,668	40.7	7,766	-27.2	6,976	-10.2	7044	1	3162	-8.4

자료원 : IMF, 거시경제통계부, EIU

5. 주요 품목별 수출입

○ 수출

(단위 : US\$백만, %)

품목명	1997	1998	1999	2000	2001
면화 및 면사	1,330.2	1,114.8	1,346.5	897.1	793.4
에너지제품	443.4	204.5	212.1	335.2	322.9
금속제품	129.3	132.0	123.7	216.7	221.9
식 품	140.4	82.8	159.0	176.4	124.9
화학제품	62.8	38.8	84.8	93.4	86.4
기계장비	232.8	108.7	99.0	111.8	122.4
기 타	1,102.4	794.5	1,215.6	985.0	1,131.7
서비스	303.0	227.7	293.3	449.1	461.3
합 계	3,695	2,888	3,534	3,264.7	3,264.9

자료원 : 거시경제통계부

○ 수입

(단위 : US\$백만, %)

품목명	1997	1998	1999	2000	2001
기계장비	1,729.1	1,329.2	1,390.6	1,044.1	1,293.0
식 품	727.0	439.3	407.5	361.1	337.7
화학제품	470.8	349.2	364.0	399.5	397.6
금속제품	282.5	259.1	245.8	253.5	343.3
에너지제품	60.3	14.1	65.4	112.7	58.7
기 타	673.0	284.4	364.0	525.5	384.3
서비스	282.5	140.8	270.7	251.0	322.3
합 계	3,767	2,816	3,111	2,947.4	3,136.9

자료원 : 거시경제통계부

II. 市場 特性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및 인적자원

- 인구가 24백만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시장
- 국민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국민성이 비교적 부지런함

나. 풍부한 천연자원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8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원유도 매장량이 많아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상당량의 수출이 가능
- 금, 구리, 은, 아연 등이 비철금속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이외에도 원자기 호에 있는 모든 천연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할 만큼 천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음. (가채자원은 3조달러)

다. 지정학적인 위치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카작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 수도인 타슈켄트는 구소련 4대도시(모스크바, 쌍트 삐쩌르부르그, 키에프)의 하나로 현재도 동서남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내륙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수출입 물품의 운송을 기차나 항공기에 의존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물류비의 부담이 큰 편임.

라. 안정된 정권의 구축

-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및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철학, 국가관, 청렴도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 '38년생인 대통령은 아직 건강상태도 매우 양호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집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국민투표로 2007년12월 까지 임기 연장)

2. 수출입 관리제도

- 보따리商 간이세율 적용
 - 2002.6.1일부로 식품은 50%, 非식품은 90%로 부과(부가세 포함)
 - 2002.8.1일부로 동 세금을 경화(달러 등)로 납부 조치
 - 2002.10.1일부로 식품은 40%, 非식품은 70%로 세율 인하 및 납부통화를 자국화로 변경 (2002.9.27일자 정부령 제335호 개인에 의한 상품 반입절차 확립문제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결정의 부분적 변경에 관하여)
- 소비재 수입 부과금
 - 2002.8.1일부로 소비재에 수입에 대해 30% 수입부과금 부과(2002.7.19일자 정부령 257호 소비재의 불법통관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 2003.1.1일부로 소비재 수입 부과금 철폐(2002.12.4일자 대통령령 소비재 수입절차 확립에 관한 대통령령 UP-3105호(2002.7.11)의 변경에 관하여)
- 수입 소비재의 우즈베크어 라벨링 의무화
 - 2003.1.1일부
 -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정부령으로 확정(12월 5일자 정부령 우즈베키스탄내 소비재 수입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상품목 : 11개 품목군>

- ① 식품(HS Code 0401-0410, 0901-0910, 1101-1109, 1201-1212, 1501-1517, 160100-1605, 1701, 1702, 1704, 1806, 1901-1905, 2001-2009, 2101-2106, 2201-2209, 2402-2403, 250100100, 250100911),
- ② 의약품(2936, 3003-3006),
- ③ 비료(3105),
- ④ 페인트(3204, 3206, 3207, 3208-3214),
- ⑤ 화장품(3303-3307),
- ⑥ 가정용 화학제품(3401, 3402, 3506),
- ⑦ 열기구(3604),
- ⑧ 카메라용품(3701-3707),
- ⑨ 살충제, 방역제,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3808, 3819, 3820),
- ⑩ 가전제품, 휴대폰, 비디오(8415, 841810, 841821-841829000, 841840, 842211000, 842310100, 8450, 845210, 846721-846722, 8471, 8509, 8510, 8516, 8517-8521, 852520910, 852540, 8527, 8528)
- ⑪ 장난감(9503, 9504)

<내용>

자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식별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품명, 제조업체, 사용기한(정해져 있는 경우), 제조일자, 사용설명서 등을 우즈베크어로 표기

<유예기간>

2003.3월 말까지 2002년 통관 제품 판매 허용. 4월1일부로 전면 유통 금지

○ 소비재 수입판매업 라이선스 철폐

-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소비재 수입판매 허용
- 2002.10.1일부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환전 분기별 제한 쿼타 철폐
- 2002.10.1일부 모든 소비재 안전증명서 제출 의무화
- 2002.9.1일부 공식 디스트리뷰터 제도 도입

- 2003.1.1일부 우즈베크어 라벨링 의무화 (200.8.20일자 정부령 소비재 수입 판매 라이선스 철폐 및 관리 개선조치에 관하여)

○ 관세 면제대상 품목 지정

2002.8.1일부로 수입관세 및 내국세 면제 대상품목 발표

- 의약품과 의료용품 : 부가가치세
- 인도주의적 원조로 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와 관세
-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 관세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체결하였거나 정부보증하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 : 관세
- 전시회, 광고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전시품으로 반입되는 물품 : 관세
- 우즈베키스탄 주재 외교단 및 면세통관자격을 갖고 있는 주재원 개인 용으로 반입되는 물품 : 관세
- 개인에 의해 상업용이 아닌 용도로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물품 : 관세 (2002.7.11일자 대통령령 제3105호)

3. 외환관리/금융제도

○ 외화환전쿼타제 철폐

- 수입계약을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한 후 거래은행을 통해 환전(외환매입)
- 서류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고 외환공급이 허용하는한 환전 가능(9.19일자 비즈니스-베스닉 보스토카誌에 공시된 안내 절차)

○ 수입대금 경화환전시 상업환율 적용

- 2002.7.16일부.
- 소비재 및 서비스 수입판매 대금의 경화환전시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업은행들의 자유환율(상업환율)을 적용(정부령 247호 장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 현금통화의 장외 유통 축소

- 소매업체의 현금등록기 설치 여부 검사 강화
- 소매업체의 현금매출 신고의 정확성 검사 강화
- 도매업체의 현금결제 여부 검사 강화
- 2002.9.1일부 기업의 상업은행 구좌로부터 현금 인출 자유화(정부령 현금통화의 은행외 유통 축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 소비재 수입용 외화환전 허용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업체가 소비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전(외환매입)을 허용기로 결정.
- '외환시장에서의 외환매매의 절차에 관한 정부령령(2001.10.7, 294호)'의 제2조(외환시장에서의 외환매매 가능한 유형)의 제2항이 '기계, 부분품, 원료 및 서비스 수입을 위한 외환 매입'에서 '소비재, 기계, 부분품, 원료 및 서비스 수입을 위한 외환 매입'으로 변경. 즉 '소비재'가 추가.(2003.1.8일자 정부령 제7호)

○ 환율 단일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6.16일부로 중앙은행 공식환율과 상업환율을 단일화 시킴. (정부령 제260호 '외환시장의 추가 자유화와 환율단일화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2003.6.11))

<참고>

- 기업은 수권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외환 매입
- 현재 26개 수권은행, 1149개 환전소 개설중
- 국민의 외환환전 부분 자유화 (비자, 항공권 불필요) : 분기 2500불 → 3000불 한도 증액(2003.6월)
- 2003.1~5월중 22만8천명이 155.7백만불 외환 매입(환전소 현찰)
- 수권은행은 외환 매매환율을 자체적으로 고시
- 정책 방향 : 외환시장자유화와 자국화폐 태환성 확립, IMF8조국 가입

◆ 카리모프 대통령 연설 (2003.5월초, EBRD 총회)

2002년중 IMF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사실상 모두 이행하였으며, 이는 향후 건설적인 협력과 IMF 8조국 서명을 위한 양호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반출 외환한도 증액

- 우즈베키스탄인이 해외여행시 반출할 수 있는 외환을 8.1일부로 기존 1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 (2003.7.28 대통령령)

4. 기타

○ 소비재 제조업체에 대한 특혜

- 법인 이윤세 인하 : 20%
- 광고지출을 조세부과 대상 소득에서 공제
- 상업은행들의 용자 적극 지원
- 우유, 육류, 모직, 과일 가공업체의 경우 원료구매시 현금결제 허용
- 원료 수입에 사용되는 외환은 의무매각 대상에서 공제 (2002.11.13일자 정부령 제390호 소비재 시장공급 촉진 및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 리스용 장비에 대해 제반세금 면제

- 2002.9.1일부로 리스용 장비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2002.8.28일자 대통령령 리스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 종합 개인소득신고제 도입

- 2003년 소득부터 적용. 정규 월급여 이외의 일회성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필요. 2005년 전면 시행 예정(2002.9.5일자 대통령령 개인의 종합소득신고 시스템의 점진적인 도입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 도매유통업체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는 도매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도매업체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2003.2.4일자 '도매유통업체의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 개인 주식배당금 소득세 면제
 - 정부는 개인의 주식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2003.2.15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증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통령령)

- 생필품 제조 외국기업에 한시적으로 면세
 - 정부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일부 소비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
 - 6월 20일자 대통령령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비재 생산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제 1조에 따르면, "의류, 양말 및 신발을 제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1월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됨."
 - 단, 면제받은 각종 세금은 재투자, 설비 현대화, 신제품 개발, 기업운영 자금, 직업훈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면제 받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전액을 추징당하고 벌금도 부과.

-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 정부 기관들의 기업의 고용에 대한 개입, 계약 및 상품운송에 대한 간섭, 특정 원부자재 사용 권고, 가격결정에 대한 간섭, 기업생산활동에 대한 간섭은 불법행위로서 금지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조사활동 감시 시스템에 관한" 정부령(2003.5))
 - 부당한 기업활동 간섭을 감시위해 국가자산위원회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부당한 간섭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체에 문의 조사하며, "신뢰전화"를 개설해 신고를 받음.

- 한편 부당한 간섭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

○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 민간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활발한 신규 설립 및 성장 추진. 기존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기업의 설립 및 등록 과정에서 관료주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설립 인허가체제를 신고등록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 (2003.8.20일자 "기업등록절차 개선에 관한" 정부령)
- 각 시구청에는 기업등록국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등록국 설치는 10월 1일까지 마무리 예정. 기업등록국은 기업등록 신청서류의 검토, 기업의 국가등기부 등록, 기업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등록은 신청서 접수후 7일에서 1개월 사이에 처리가 완료돼야 함.

5. 비즈니스 상담시 유의사항

가. 대금의 영수

- 일반상품의 수입은 정부에서 환전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개설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외화를 예치하여야만 L/C의 개설이 가능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이 어려움.
- 일부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중 50%는 정부에서 공식환율로 강제 매각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L/C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런 기업이 매우 드문 형편임.
- At Sight L/C의 경우에도 우즈베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설은행에서 매입은행으로의 대금송금이 상품이 우즈베크내에서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해 수출계약 체결시 주의 필요

나. 계약체결의 효력발생 (계약등록제)

- 우즈벡의 대외경제부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가격, 거래조건 등을 심사해 기준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있음. (가격심사)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외경제성의 심사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대금지불과 상품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수출업체로서는 조기 상품제조 착수 등의 경우 심각한 손실을 우려가 있음.
- 일례로 한국의 수출기업은 D/A조건의 계약 체결 후 대외경제부의 계약서 심사 이전에 물품을 선적했는데 물품의 도착이후까지도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통관을 못하고 물품을 제3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한 사례가 있음.

다. 구상무역의 실시

- 우즈벡과 수출시 수입상들이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이 우즈벡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인 면화 및 면사, 금, 구리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물물교환이 금지되어 있거나 민간인의 수출 자체가 제한되어 있음.
- 실제 구상무역이 가능한 품목은 농산물 등 극소수에 국한됨.

라. 보따리 무역상과의 거래

- 보따리 무역상들은 한국을 왕래하며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오랜 거래선이 확립되어 있고 서울에 체류하면서 연락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음.
- 기존 거래선들과의 거래는 통상 일부 선금에 나머지는 사후지불 등의 형태를 취하는데 신규거래의 경우에는 상호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금지불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보따리 상인들에게 사후지불분을 영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어 주의가 요망됨. (외상거래로 발전)

6. 수출입 제한품목 및 수입규제

가. 수출입 제한 품목 (대외경제관계성의 허가 대상 품목)

- 무기, 귀금속 및 동 제품, 우라늄, 방사물질 관련 기기

나. 수출에 따른 특혜 미 제공 품목

- 면사, 원면,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고철

다. 수출 금지 품목

- 곡물, 빵, 밀가루, 가금류, 육류, 분유, 차, 설탕, 에틸 주정, 골동품, 식용유, 가죽원료, 비철금속 스크랩, 누에고치와 부산물

라. 수입 금지 품목

- 미풍양속, 공공질서 위해 각종 매체 (출판물, 테이프 등)

마. 트랜지트 운송 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항공기와 부품, 무기 제조설비, 독극물, 수입금지 품목

바. 수출 제한 품목 (대외경제관계성 계약등록품목)

- 무기, 귀금속·보석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성 물질 관련 기기, 비철금속, 압연철강 및 고철, 석유, 천연가스, 면사

사. 수출입 제한 품목 (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 노동력 파견 및 외국 근로자 고용, 영화 및 비디오, 오디오 제품 수입, 과학기술 및 발명품의 수출, 대외 투자, 예술품의 수출, 희귀 동식물 수출, 오존 파괴물질 수출입

아. 자국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품

- 해바라기 기름, 지방, 화장암, 폴리브덴, 시멘트, 석유와 석유제품, 질소, 의약품, 비료, 염료, 타이어, 종이, 견사, 모, 면사, 합성직물, 에어컨, 냉장고, 트랜스포머, 전기기기, 자동차 등등

자.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

-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장비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전기기기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Ⅲ. 우즈베키스탄 投資環境要略

<p><시장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2천5백만명 ○ 위치 : 중앙아시아 ○ GDP : 110억불('01년) ○ GDP성장 : 4.2%('02년) ○ 대외무역 ('02) : 수출-30억불, 수입-27억불 	
<p>장 점 (Opportunities)</p>	<p>단 점 (Ris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아 최대 내수시장 - 중앙아 5개국중 최대 ② 제조업 발달 부진 - 중소형 투자 유망 ③ 풍부한 부존자원 - 금, 석유가스 등 3조 달러 ④ 투자자 지원 정책 - 세제감면 등 ⑤ 저렴한 인건비 - 월 \$40 수준 ⑥ 저렴한 에너지 비용 - 에너지 자급자족, 저렴 ⑦ 온난한 기후조건 ⑧ 치안안정 ⑨ 자국시장 보호정책 - 고관세 등 장벽 ⑩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 중심 - 인근 4개국과 모두 접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제전환 과도기 - 경제불안요인 내재 ② 부정부패 - 비효율 구조 양산 ③ 자본주의적 경험 부족 - 이해와 끈기 필요 ④ 법령미비 및 수시 개폐 ⑤ 과도한 물류비용 - 내륙국가 ⑥ 소비자 구매력 부족 - 1인당 GDP 500불 ⑦ 연관산업 미발달 - 부자재 조달 곤란 ⑧ 화폐 태환성 미확립 - 과실송금 및 원자재 수입장애 ⑨ 금융부문 미발달 - 현지금융 곤란 ⑩ 과도한 기업활동규제 - 기업활동 위축
<p><투자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형태 결정 : 단독 혹은 합작 ○ 현지 파트너 선정 : 장기적 협력관계 ○ 문서작성 : 법률회사 자문 ○ 원료공급 : 수입 혹은 국내조달 	

IV. 우리나라의 進出 現況 및 問題點

1. 한-우즈벡 교역 현황

가. 연도별 수출입 추이

연도	수출		수입		수지	합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5	244.2	-	134.7	-	109.5	378.9	-
1996	493.8	102.2	196.1	45.5	297.7	689.9	82.1
1997	675.1	36.7	297.9	52.0	377.2	973.0	41.0
1998	383.9	-43.1	142.3	-52.2	241.6	526.2	-45.9
1999	341.4	-11.1	208.3	46.3	133.1	549.7	4.5
2000	230.4	-32.5	103.9	-50.1	126.5	334.3	-39.2
2001	345.6	50.0	136.7	31.5	208.9	482.3	44.3
2002	188.4	-45.5	96.8	-29.2	91.6	285.2	-40.9
*03(1-9)	163.1	5.6	62.0	-17.4	101.1	230.3	-35.5

자료원 : KOTIS

- 한-우즈베키스탄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7천만불까지 달했으나, 그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금년들어 약간 회복세를 보임.
- 금년 1~9월중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한 188백만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한 62백만불임.
- 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수입이 전체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여건의 개선 또는 신규투자계획이 적으며, 외환부족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수입억제조치로 수입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어 당분간은 양국간 교역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

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순위	품목명	품목코드	2001		2002(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총계		345,687	50	154,455	-42.3
2	곡실류	11	126	345.7	86	45.9
3	식물성물질	13	164	-48	72	-56
4	식물성 재료	14	16	757.7	0	-99.8
5	기호식품	15	6,710	264.1	1,226	-75.7
6	농산가공품	16	7	-94.1	25	680.1
7	종자류	17	28	-	8	-70.3
8	고령토	123	99	2,175.50	67	-30.9
9	기타비금속광물	129	11	41	3	-63.4
10	석유제품	133	960	17	519	-29.3
11	기초유분	211	88	319	65	-1.7
12	석유화학중간원료	212	0	-77.5	2	-
13	석유화학합성원료	213	27	0.4	29	24.7
14	합성수지	214	11,108	-6.2	4,258	-53.6

자료원 : KOTIS

다.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불, %)

순위	품목명	품목코드	2001		2002(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총계		136,726	31.5	75,156	-16.3
2	곡실류	11	198	-81.3	140	25.3
3	산식물	12	219	47.8	259	126
4	식물성물질	13	0	-	0	-
5	식물성 재료	14	51	237.8	14	-72.6
6	기호식품	15	555	83.7	523	30.1
7	기타농산물	19	85,053	-3.5	56,049	-17.4
8	산동물	21	23	-	249	5,497.20
9	축산가공품	24	11	298.5	11	42.7
10	플라스틱 제품	310	87	482.7	136	57.6
11	고무제품	320	0	-	1	-
12	가죽	331	936	3,190.30	342	-53.8
13	인조섬유	411	0	-	10	-
14	천연섬유사	421	17,995	116.8	10,948	-21.6

자료원 : KOTIS

2. 한-우즈벡 투자 현황

- 한국은 미국, 중국, 터키,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주요 외국인 투자 진출국
- 총 투자 누계는 약 \$10억
 - * 한국은행 공식 등록 통계 : 61건, 589백만불(2003년 9월누계신고기준)
- 주요 투자기업
 - 대우자동차 : 투자규모 6억불, 자동차 조립생산
 - 갑을방적 : 투자규모 3억불, 면화 가공
 - 대우방적 : 투자규모 1억불, 면화 가공
 - 대우유니텔 : 제1 이동통신사업 (시장점유율 40%)

3. 문제점

- 높은 투자 리스크 (비즈니스 환경 불안정)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법령의 개폐가 잇따르고 있으며, 아직 까지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할 정도의 법령은 불충분
 - 잦은 정책변경과 관려주의
- 까다로운 외환관리제도
 - 외환부족으로 엄격하게 외화환전을 제한
 - 외환의 인출 및 대외송금 제한
- 비자, 거주등록 등 생활불편
 - 비자 발급 기간 및 요건 엄격
 - 거주등록 및 지속적인 갱신 필요
- 경기침체로 수요 부족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4% GDP 성장
 - 주민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 구매력 감퇴

V. 對우즈베키스탄 進出戰略(中長期)

1. 현지 거점 마련

-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도기에서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시에 대처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현지 거점 마련 방법으로는 지사를 개설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지사유지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거나, 현지 에이전트 또는 딜러를 두는 것이 효과적.

2. 인간관계 구축

- 시장경제를 뒷 받침해주는 법령이 미비되어 있어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가 많고, 관료 들의 부당한 간섭 등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력 후원자가 필요.
- 끈끈한 인간적 신뢰관계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는 것이 필요.

3. 중소형 제조업 투자진출

- 산업 및 수출산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업제품을 수입에 의존.
- 높은 수입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을 선점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제조업 투자진출이 효과적.

4. 과실 공유

-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개방 역사가 일천하여 국제 상관행에 미숙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어려움.
-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 유지를 위해서는 1회성 거래를 지양하고, 과실(이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

VI. 商品, 産業別 進出戰略(進出有望品目)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중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이 될 수 없는 품목들은 조선, 반도체이며,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음.

1. 자동차 및 부품

- 우즈베키스탄내에는 대우車 조립공장이 가동중이며, 매년 5만대 가량을 생산 중이고, 현재 운행중인 대우車(넥시아, 다마스, 티코, 마티스)는 20여 만대에 달함.
- 조립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한 대우車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 바람직.
- 한국차의 운행대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요 증대

2. 가전제품

- 가전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 LG, 대우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유지.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의 수출이 유망.

3. 정보통신기기

- 정부는 정보통신부문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PC 수입시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면제.
- 우즈베키스탄은 정보화 초기단계에 있어 관련 단말기 및 장비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

4. 섬유 직물류

- 우즈베키스탄은 경공업 발달이 부진하고, 섬유직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산 직물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음.
- 섬유봉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편직물류의 수요 증가 예상. 직물은 현재 소위 보따리商이 한국으로부터 반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중의 하나.

5. 사무용품

- 필기구, 공책 등 사무용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

6. 중소형 플랜트

-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성장 초기에 있으며, 각종 중소형 플랜트 수요가 많음.
- 지식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플랜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적으며,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7. 석유화학원료

-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원료의 자체 공급이 매우 제한적. PE 생산은 시작되었으나, PP등 여타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
- PET 병 원료는 주요 수출 품목중의 하나.

8. 일반 소비재

- 신발, 주방용품, 화장품, 면도기 등 기타 소비재들의 수출도 유망. 정부의 소비재 수입억제정책으로 최근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외환사정이 개선될 경우 억제되었던 수요가 실질 구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VII. 向後 展望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최대 시장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더딘 개혁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부진한 상태이며, 태환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대외교역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2~3년 내 상당한 시장상황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1. 외환자유화

-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외환자유화 및 IMF 8조국 가입을 발표하였으나, 번번이 시행되지 못함.
- 외환자유화로 인한 환율상승과 인플레이가 우려되고, 외환수급 불균형이 예상되어 시행되지 못했으나, 여타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번은 넘어가야 할 과제임.
- 현재로서는 외환자유화 시기를 단언할 수 없으나, 향후 2년 가량 경과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

2. 자국산업보호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음.
- 정부는 강력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국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수입규제 및 장벽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3. 내수 활성화

- 4%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점진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억제되어 있던 잠재수요(교체 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내수증대 시점이 도래. 내수 증대 시점은 외환자유화 시점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 (현재에도 수입된 상품은 잘 판매되고 있는 상태)

별첨

러시아 수출지원제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의 러시아 수출지원제도

2003. 11.

1. 전대자금대출 지원제도
2. 단기연불수출 신용공여제도
3. 포페이팅제도

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 : 수출입은행 전대자금팀 김상형 팀장 (Tel: 822-3779-6251)
권원협 과장 (Tel: 822-3779-6376)
외환업무실 천헌철 부부장 (Tel: 822-3779-6469)
김선영 부심사역 (Tel: 822-3779-6476)
포페이팅 송인대 팀장 (Tel: 822-3779-6471)
권창식 부부장 (Tel: 822-3779-6472)
이영섭 차장 (Tel: 822-3779-6464)
전행렬 대리 (Tel: 822-3779-6475)
(대표 팩스 : 822-3779-6764)

수출입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신동표 소장(Tel : 7-095-258-2366)
서석형 차장(Tel : 7-095-258-2366)
(대표 팩스 : 7-095-258-2368)

상기 제도는 건당 수출규모가 작은 거래 지원에 적합하며, 대규모 산업설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Direct Credit),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를 활용해야 함.

전대자금대출 지원제도

1. 개념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주면, 그 금융기관이 동 한도를 이용,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자국 수입자에게 수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2. 신용한도 설정 은행 및 신용한도

- Rosbank : 30백만불
- Alfabank : 50백만불 (양해각서 체결)

3. 지원 조건

- 적격 품목 : 한국산 상품/용역
- 대출 기간 : 6개월이상 10년 이내
- 용자 비율 : 수출계약금액의 85%. 단 대출 기간 2년 미만의 거래는 100%
- 기준선수금율 : 수출계약금액의 15%(2년 이상거래)
- 적용 금리
 - o 고정금리(2년이상 거래) : OECD 금리(CIRR*) + 대외위험수수료
 - o 변동금리(2년미만 거래) : 건별 기간별 차등 결정
 - *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OECD 사무국에 의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
 - o 적용금리(수입자 부담금리) :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러시아은행 가산금리
 - * 가산금리 수준은 수입자의 신용도, 차주국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전대은행이 적정수준에서 결정
- 상환 방법 : 원리금 년 2회 정기균등상환(단, 2년미만 거래 제외)
- 채권보전 : 신용

4. 제도의 특징

수출자는 전대은행 발행 신용장에 따라 수출목적물을 선적하고 일람불로 수
은으로부터 수출대전 회수 (해외은행 위험 수은 부담, 신시장개척에 유용)

5. 취급 절차

“별 첨”

단기연불수출 신용공여제도

1. 개념

단기연불수출지원 신용공여 협정이란 국외은행앞으로 일정한도의 여신한도
를 설정한 후, 무역거래의 성격에 따라 리파이낸스, 신용장확인 및 외국환
보증 등의 무역신용방식을 국외은행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일괄서비스
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용한도 설정은행 및 신용한도

- Vneshtorgbank : 30백만불
- Gazprombank : 20백만불

3. 상품별 업무 개요

- 리파이낸스(Refinance)
수출입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람불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동 대금을 상환받는 제도
- 신용장 확인(L/C Confirmation)
신용장 개설은행과 같은 지위에서 수출대금 결제를 약속함과 동시에 수
출입은행이 매입하는 제도. 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은행이 발행한 신
용장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도를 보장하는 제도

외국환 보증 (Guarantee)

개발도상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나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시중은행이 할인매입하고자 할 때 개발도상국 은행의 신용위험을 수출입은행이 복보 증해주는 제도

4. 지원 조건

[리파이낸스]

- 대상 거래 : 건당 거래금액이 U\$20백만 이하인 한국산 상품/용역
- 리파이낸스 기간 : 1년
- 용자 비율 : 신용장금액의 100%
- 적용 금리 :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변동금리)+러시아은행 가산금리
-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채권보전 : 신용

[신용장확인]

- 대상 거래 : 건당 거래금액이 U\$20백만 이하인 한국산 상품/용역
- 확인대상 신용장 : 결제기간 2년 미만
- 확인 금액 : 신용장금액의 100%까지
- 확인수수료율 : 시장 요율
- 채권보전 : 신용

[외국환보증]

- 대상 거래 : 건당 거래금액이 U\$20백만 이하인 한국산 상품/용역
- 보증대상 증권 : 적격은행발행 보증신용장 등
- 보증 기간 : 결제기간 2년 미만
- 보증 금액 : 건당 거래금액이 U\$20백만 이하 신용장금액의 110%
- 보증수수료율 : 시장 요율
- 채권보전 : 신용
- 선행조건 : 약정체결 국내 시중은행(조흥, 외환)이 보증신청

5. 제도의 특징

- 해외은행의 위험을 수은 부담 (신시장 개척에 유용)
- 수출이행능력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상품

6. 취급 절차

“별 첨”

포페이팅 제도

1. 개념

수출입은행이 외상수출을 한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수출자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수출자는 수출하는 즉시 수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는 제도(사전에 대상은행과 신용한도 설정 약정서 체결 필요)

2. 적격 신용장발행 은행 (2003. 11월 현재)

Vneshtorgbank, Sberbank, Gazprombank, International Moscow Bank, Moscow Business World Commercial Bank, Alfabank, Rosbank

3. 지원 조건

- 대상 환어음(수출채권) : 신용장방식하에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이 30일 이상 2년 미만
- 금융지원 비율 : 신용장 개설금액의 100%
- 할인료율 : Libor + spread (건별 기간별 차등 결정)

- 대금지급방법 : 환어음매입시 할인료 차감후 지급. 단, 신용대출 취급요건 미달 업체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 대금 지급
- 채권보전 : 신용

4. 제도의 특징

수출자는 적격은행 발행 기한부 신용장에 따라 수출목적물을 선적하고, 일람 불 형태로 수출대전 회수 (해외은행 위험 수은 부담, 신시장개척에 유용)

[참고 : 시중은행의 환어음 매입 비교 : 소구(Resource)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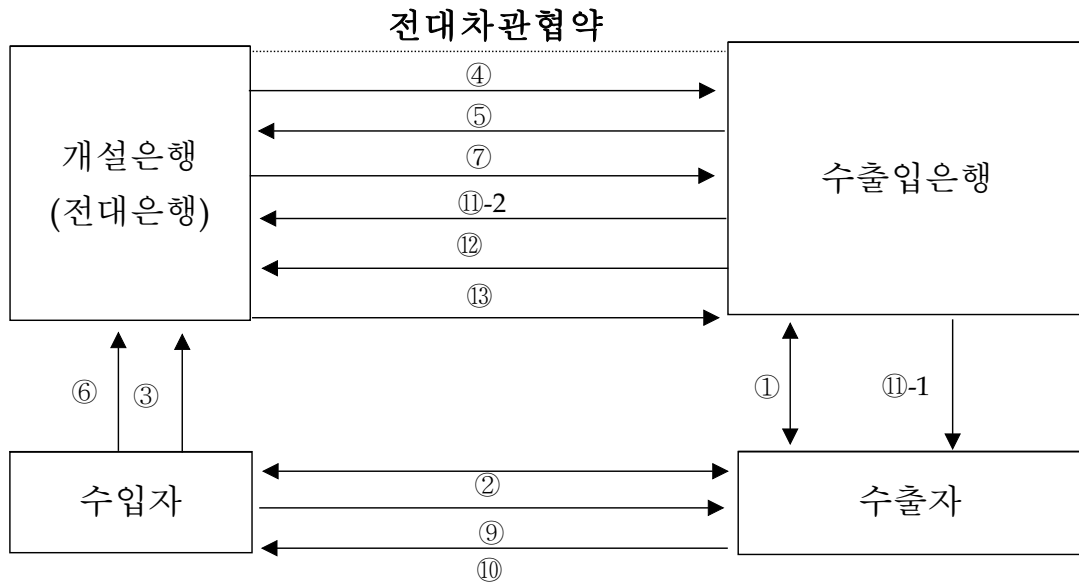
- ▷ 포페이팅은 수출자앞 소구권이 없으나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은 수출자앞으로 소구권을 행사
- ▷ 포페이팅의 경우, 소구권을 포기하는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배서인(수출자)은 소구당할 위험이 없으며, 어음의 최종소지인(수은)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에게 유리

5. 취급 절차

“별 첨”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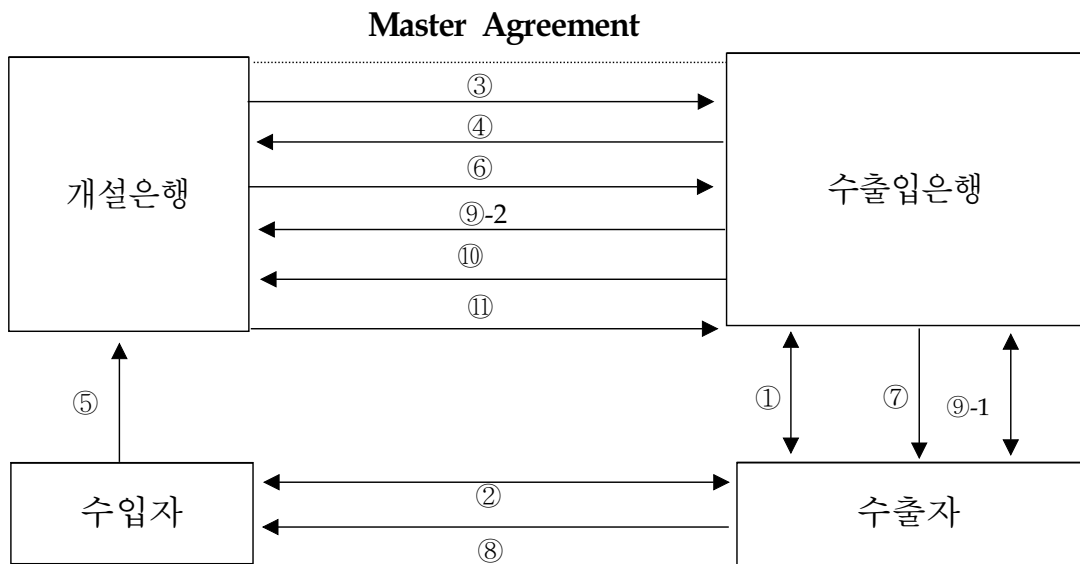
1. 전대자금대출 업무처리 도표(신용장방식)



- ① 사전 상담
- ② 수출 계약
- ③ 대출 신청
- ④ 전대자금 승인신청
- ⑤ 전대자금 승인통보
- ⑥ L/C 개설 신청
- ⑦ L/C 개설(일람불)
- ⑧ L/C 통지
- ⑨ 선수금 수취(2년 미만의 거래의 경우에는 생략)
- ⑩ 선적
- ⑪-1 대출집행 (매입)
- ⑪-2 상환기일 등 통보
- ⑫ 선적서류 발송
- ⑬ 상환

2. 리파이낸스 업무처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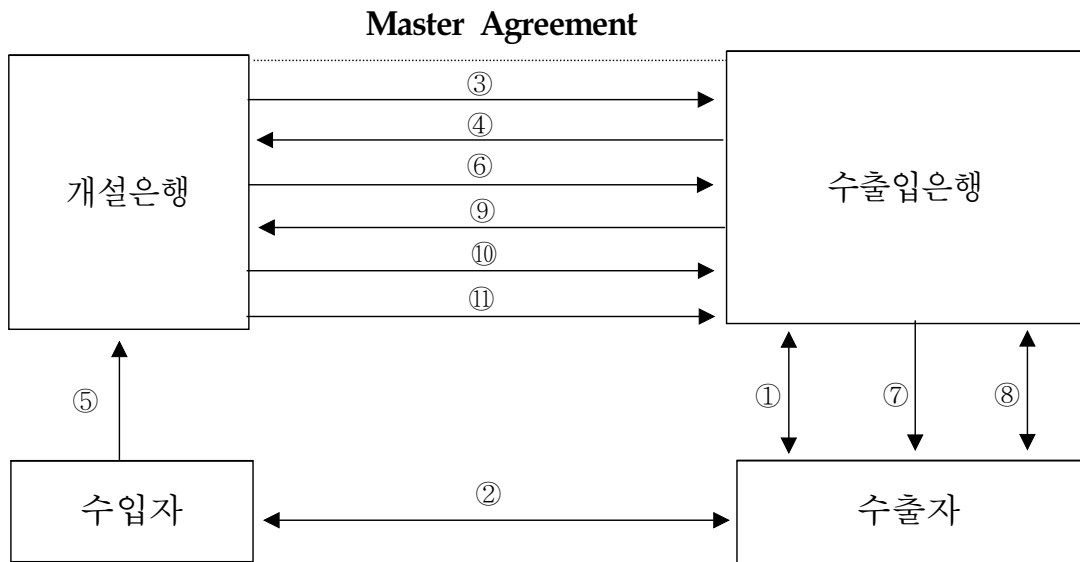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이 매입은행 역할



- ① 사전 상담
- ② 수출 계약
- ③ 리파이낸스 승인신청
- ④ 리파이낸스 승인통보
- ⑤ L/C 개설 신청
- ⑥ L/C 개설
- ⑦ L/C 통지
- ⑧ 선적
- ⑨-1 선적서류 매입
- ⑨-2 상환기일 등 통보
- ⑩ 선적서류 발송
- ⑪ 상환

3 신용장 확인업무 처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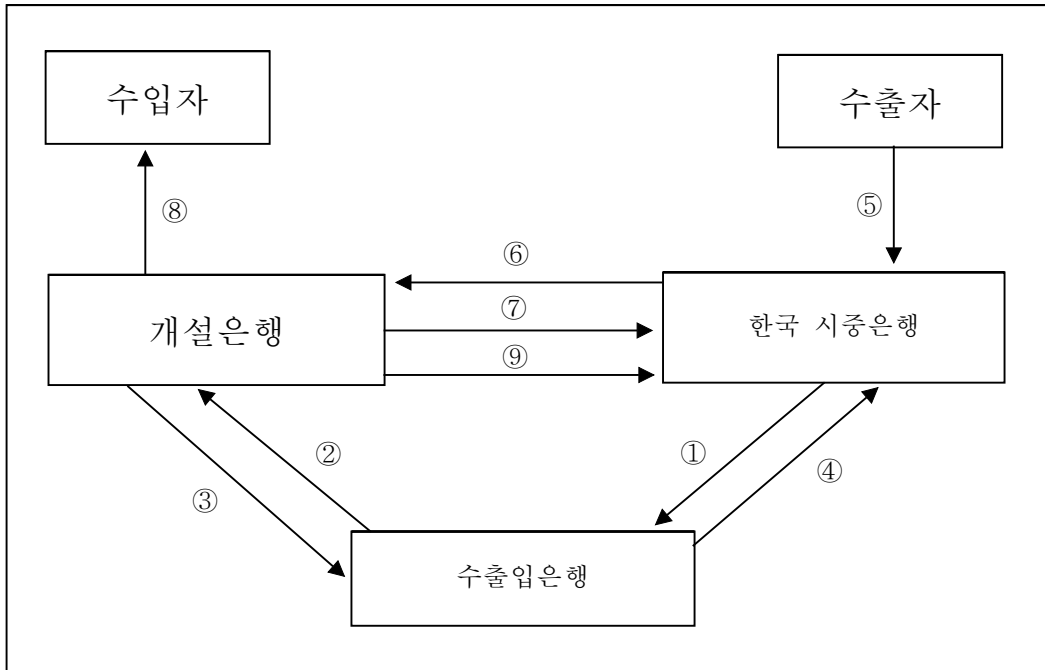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이 매입은행 역할 병행



- ① 사전 상담
- ② 수출 계약
- ③ 신용장 확인 승인 신청
- ④ 신용장 확인 승인 통보
- ⑤ 신용장 개설 신청
- ⑥ 신용장 개설
- ⑦ 신용장 확인 및 통지
- ⑧ 선적서류(수출환어음) 매입
- ⑨ 선적서류(수출환어음) 발송
- ⑩ 인수통지서(Acceptance Advice) 발송
- ⑪ 대금 상환

4. 외국환 보증업무 처리 도표

● 한국 시중은행이 보증 신청



- ① 보증 신청
- ② 보증 동의여부 문의
- ③ 보증 동의서 접수
- ④ 보증서 발급 (사본을 개설은행앞 발송)
- ⑤ 선적서류(수출환어음) 할인 매입
- ⑥ 선적서류(수출환어음) 발송
- ⑦ 인수 통지서(Acceptance Advice) 발송
- ⑧ 선적서류(수출환어음) 인도
- ⑨ 대금 지급

5. 포페이팅 절차

[수출업체의 주거래 은행 경유시]

- ① 수출자로부터 L/C 사본 입수
- ② 매입확정조건(Firm Offer) 제시 (은행 → 수출자)
- ③ 주거래은행에 선적서류 매입 신청(Firm offer 사본 포함)
- ④ 주거래은행이 대금 지급 (주거래은행별로 대금지급조건 상이)
- ⑤ 주거래은행이 수출입은행앞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제출
- ⑥ 수출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 ⑦ 수출입은행이 주거래은행앞 대금 지급

[수출입은행에 직접 매입의뢰시]

- ① 수출자로부터 L/C 사본 입수
- ② 매입확정조건(Firm Offer) 제시 (은행 → 수출자)
- ③ 수출입은행앞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매입 신청
- ④ 수출입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앞 송부
- ⑤ 수출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필요 서류]

- ① 상담시 : 수출거래 내용 또는 신용장 사본
- ② 외국환거래 약정체결 : 수은 양식
- ③ 외국환거래 약정서(포페이팅 거래용)
- ④ 인감·명판 등 신고서(외환거래용)
- ⑤ 인감증명서
- ⑥ 상업등기부등본
- ⑦ 거래 계좌 신고서 (통장표지 사본)
- ⑧ 수출거래별 매입확정조건(firm offer) 체결 : 수은 양식
- ⑨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신청서 : 수은 양식